

#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김나영\*

## <차례>

- I. 머리말
- II. 포작의 명칭과 성격
  - 1. 포작의 명칭
  - 2. 포작인의 존재와 의미
- III. 포작인의 출륙과 존재양태
  - 1. 포작인 출륙의 사회·경제적 배경
  - 2. 출륙 포작인의 실태
  - 3. 조선정부의 출륙 포작인에 대한 대책
  - 4. 포작인의 소멸 시기와 원인
- IV. 맷음말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조선시대 '전복을 채취하는 남자'로 일컬어지며 제주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개척해 나간 '포작인'의 존재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제주도 사회상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주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바다를 무대로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혹은 상선을 이끌고 주변국들과 교역을 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등의 다양한 바다의 역사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제주도 사람들의 생 한 가운데, 거친 파도와 함께 그 이름이 사라져간 포작인이 있었다. 필자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인에 대한 존재의의 밝히고,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이들의 존재양태를 고찰함으로써 과거 '수탈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왔던 그들을 새롭게 재조명 해보고자 하였다. 오랜 옛날 그들의 해상활동은 실로 다방면에서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지배체제의 모순 속에서 외지로의 삶의 공간을 확장시켜 나감에 따라 유동적으로 한계점을 타개해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포작인들의 해상활동의 모습은 해양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제어 : 포작인, 전복, 해산물, 진상, 출록금지령, 6고역

### I. 머리말

21세기를 바다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최근 해양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고 있다. 역사학의 일각에서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을 이용해 해안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해양사(海洋史)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제주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바다를 무대로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혹은 상선을 이끌고 주변국들과 교역을 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등의 다양한 바다의 역사를 전개해 왔다.

이처럼 다양한 바다의 역사를 전개한 제주민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제주지역 연근해에서 활발히 해양활동을 전개한 '전복을 채취하는 남자'라 일컫는 '포작(鮑作)'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인들이 바다를 주무대로 전개한 어로나 교역 활동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루어진 필수불가결한 수단이었다. 나아

가 조선시대 포작에 대한 어복(魚餕) 진상 등의 경제적 수탈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해양을 교두보로 삼아 삶을 개척해 나가는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즉 제주도민에게 부과되었던 과중한 부역과 조세, 가혹한 착취와 수탈로 인해 포작인(鮑作人)들은 결국 바다를 유랑했으며 혹은 내지(内地, 한반도부) 해안에 정착하기도 했음을 문헌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바다를 무대로 삼아 생활해 온 제주도 포작인들의 배를 운전하는 능력과 항해술은 조선왕조에 의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왜구 침입시 이들을 회유하여 수군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포작인들에 대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인 압박의 가중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들이 표출되어 나타났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해양으로의 진출을 금하는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을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해양활동을 근간으로 하는 포작의 모습은 점차 자취를 잃게 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 속에서 치열하게 해양 활동을 전개한 포작에 관한 제반 연구를 통해 포작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잊혀진 제주도의 활발했던 해양사의 단면을 살피고자 한다.

## II. 포작의 명칭과 성격

### 1. 포작의 명칭

‘포작(鮑作)’이란 용어는 「성종실록」 14년(1483) 12월 6일 을축조 기사인 “鮑作人等自濟州而來”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sup>1)</sup> 이후 포작과 관련한 명칭 등은 「조선왕조실록」 및 여러 고문헌 곳곳에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포작’에 관한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동일한 포작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차용표기로 기록되어져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것은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해 포작을 해석한 결과라 사료된다.

이에 포작의 명칭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요구되어짐에 따라 우선, 「조선왕조실록」 원문에 나타난 포작의 명칭과 그 용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포작의 명칭과 용례<sup>[2)</sup>

명칭 \ 왕조	성종 (1469~ 1494)	연산군 (1494~ 1506)	중종 (1506~ 1544)	명종 (1545~ 1567)	선조 (1567~ 1608)	광해군 (1608~ 1623)	숙종 (1674~ 1720)	정조 (1776~ 1800)	합계
포작인(鮑作人)	6	1	4	1	8	1			21
포작간(鮑作干)	2		8	4	5				19
포작한(鮑作漢)			2		1	1			4
복작간(蝮作干)	1	1							2
포작배(鮑作輩)					1				1

1) 「성종실록」 권161, 성종 14년 12월 6일 을축조

2) <표 1>은 「조선왕조실록」을 참고로 표 작성.

기타 (鮑作船·鮑作)		3	6		1	1	2	1	14
합계	9	5	20	5	16	3	2	1	61

위의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포작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서는 59건의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사 가운데 성종 16년(1485) 4월 12일 기사<sup>3)</sup>와 중종 18년(1523) 7월 20일 기사<sup>4)</sup>에는 한 기사 안에 '포작간(鮑作干)'과 '포작인(鮑作人)'의 명칭이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는 총 61건의 포작과 관련한 명칭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포작(鮑作)의 직역을 담당한 이들의 명칭을 포작인(鮑作人) · 포작간(鮑作干) · 포작한(鮑作漢) · 복작간(鰐作干) 등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포작인, 포작간이라는 명칭이 40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유사한 포작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의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명칭 사용빈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sup>5)</sup>에는 포작간(鮑作干)을 "전복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을 낫잡아 이르던 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포작(鮑作)에 대해서는 "보자기의 잘못, '보자기'를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보자기를 "바다 속에 들어가서 조개, 미역 따위의 해산물을 따는 일을 하는 사람; 해인(海人) · 포척(鮑尺) · 해녀(海女)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재기는 '잠수부'의

3)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 4월 12일 계해조

4)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 7월 20일 무자조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중 · 해(두산동아, 1999).

방언(경남)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보자기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을 뜻한다 하겠다.

『한국한자어사전』<sup>6)</sup>에서도 ‘포작(鮑作) · 포작선(鮑作船) · 포작인(鮑作人) · 포작간(鮑作干) · 포작한(鮑作漢) · 포척(鮑尺)’ 등 포작과 관련한 다양한 명칭들이 등재되어 있다. 여기서 포작(鮑作) · 포작간(鮑作干)이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이는 일 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정의내리고 있으며, 이때 포작간의 ‘간(干)’은 ‘인(人)’이나 ‘한(漢)’의 뜻으로 사람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이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이는 한자표기 포작(匏作)은 포작(鮑作)<sup>7)</sup>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한다.<sup>8)</sup>

또한, 포작인 · 포작간 등의 명칭에 대해 다카하시 기미아끼(高橋公明)는 ‘간(干)’은 본래 국가로부터 부역이 주어진 사람의 명칭이며, 현재干은 ‘간’이라고 밖에 읽지 않지만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한’이라고 발음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干은 군(軍) · 척(尺) · 정(丁)<sup>9)</sup>과 마찬가지로 대개 그 신분은 양인으로 역이 천하다는, ‘신양역천(身良役賤)’인 사람들의 명칭 말미에 사용되며, 약간 차별적인 어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0)</sup> 「태종실록」 태종 15년(1415), 4월 13일 경진조 기사를

6) 단국대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韓國漢字語辭典』 권4, 범호밀部~피리악部(단국대학교출판부, 1997).

7) 포작(보재기) : 한자어 포작(鮑作)은 ‘보재기’의 한자 차용 표기로, 다른 자료에서는 脍作 · 浦作 등으로도 표기된다. 보재기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조개 · 미역 등 해물을 채취하는 사람인 ‘보자기’의 제주도방언이다.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8) 『법환 즘녀마을 역사·문화 고증 및 기본계획』(서귀포문화원, 2004).

9) 소금을 조공하는 ‘염간(鹽干)’, 지역의 진에서 군역을 수행했던 제주여성 군인인 ‘여정(女丁)’, 소위 백정이라고 불려졌던 ‘화척(禾尺)’ 등이 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림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54~55쪽).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병조(兵曹)의 수교(受敎) 내에 '칭간칭척(稱干稱尺)이라 하는 자는 모조리 보충군(補充軍)에 소속시키라.' 하였으나, 간척(干尺)이란 것은 전조(前朝)의 제도에 역천신랑(役錢身良)으로 적(籍)에 올려서 역(役)을 정하여 조정의 반열에 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이들을 보충군에 소속시키게 되면, 서반(西班牙)의 대장(隊長)과 대부(隊副)의 직책을 받게 되어 그 실마리가 벌써 열리게 되니,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또 외방의 주군(州郡)에서도 간척인(干尺人)들을 역사(役使)시키고 있으니, 지금 주군으로 하여금 정군(正軍) 1천 명에 봉족(奉足) 2천명을 청하게 하는 것도 어려우니, 원천대, 윗 항의 간척들을 보충군에 소속시키지 말고, 전역(前役)에 환속시켜 주(州)·군(郡)을 실하게 하소서.<sup>11)</sup>

이 기사는 조선시대 간척(干尺)에 대한 신분제도상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간(干)이라 칭하고 척(尺)이라 칭하는 자, 즉 칭간칭척(稱干稱尺)인 사람들을 보충군으로 소속시키면서 그들의 신분이 신양역천(身良役錢)인 계층이라는 것에 대해 간략히 적어 놓고 있으며,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태종 연간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sup>12)</sup>

10) 고교공명(高橋公明), 「中世東亞世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道를 중심으로」『탐라문화』 제8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120쪽.

11)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4월 13일 경진조

12) 이러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바탕으로 유승원은 여말선초에 '干'이나 '尺'이라는 칭호를 붙여 이름 지어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신양역천(身良役錢)인 계층으로 인식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들은 곧잘 칭간칭척자(稱干稱尺者) 또는 간척지도(干尺之徒)로 범칭되고, “나라의 풍속이 신양역천(身良役錢)을 혹은 干이라 칭하고 혹은 尺이라 칭한다”라는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세종 원년 5 경오)의 기사와 같이 한 때 신양역천의 표본처럼 간주되고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승원, 「양인」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94, 180~187쪽).

따라서 포작간(鮑作干)의 명칭에서의 '간(干)'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포작간(鮑作干)은 신양역천(身良役賤)으로, 포작(鮑作)이라는 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의 진상역(進上役)을 담당하였던 이들에게 불여져 불려 졌던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제주도와 관련한 고문헌들에 나타난 포작인의 명칭을 살펴보면, 김상현(金尙憲)『남사록(南槎錄)』에는 포작배(浦作輩)·포작인(浦作人)·포작(浦作) 등으로 나타나며, 이원진(李元鑑)의『탐라지(耽羅志)』와 이익태(李益泰)의『지영록(知瀛錄)』, 이원조(李源祚)의『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등에는 포작(鮑作)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또한 김성구(金聲久)의『남천록(南遷錄)』에는 포작(浦作)·포한(鮑漢)으로 불리고 있고, 이증(李增)의『남사일록(南槎日錄)』에는 포작(浦作) 또는 포작배(浦作輩)라 적고 있으며, 이형상(李衡詳)의『남한박물(南宦博物)』에는 포작(鮑作)·포한(鮑漢)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살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천정일(泉靖一)의『제주도』에 보면 중국이나 일본의 고문헌에는 제주의 포작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잠수사(潛水士)'라고도 지칭하고 있다.

위와 같이 포작인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및 제주도 관련 고문헌과 기존에 연구된 바에 의거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포작(鮑作) 직역을 담당한 이들의 명칭과 관련한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이를 표기한 한자차용표기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것이 포작인(鮑作人), 포작간(鮑作干), 포작한(鮑作漢)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문헌상에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는 이들의 명칭 가운데

출현 빈도가 가장 높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포작(鮑作)’ 역을 담당하는 사람(人)의 뜻을 지니는 ‘포작인(鮑作人)’으로 통일하여 이 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며, 후일 포작의 구체적인 용어 검토 및 고증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2. 포작인의 존재와 의미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 우는 포작인(鮑作人)은 과연 누구이며, 어떠한 직역을 담당하였고, 통념상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 잡녀(潛女)와 두모악(豆毛岳; 豆無岳)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고찰하여 포작인의 존재와 의미를 규명해 나가고자 한다.

여기서의 포작인은 제주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라도<sup>13)</sup>·충청도<sup>14)</sup>·경상도<sup>15)</sup>를 비롯 황해도<sup>16)</sup> 등지에서도 등장하고 있음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이에 포작인은 제주도에서 뿐만이 아니라

13)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20일 을미조, 「全羅道右道鮑作干等逢倭于甫吉島, 被奪衣糧雜物, 火其船隻」 전라도 우도(右道)의 포작간(鮑作干)들이 보길도(甫吉島)에서 왜적(倭賊)을 만나 의복·식량·잡물(雜物)을 빼앗기고 배도 소실(燒失) 당했다.

14) 『중종실록』 권48, 중종 18년 7월 28일 갑오조, 「忠清道鮑作人所獲唐人(回) [八]名入來」 충청도(忠清道) 포작인(鮑作人)이 포획한 중국사람 8명이 서울로 올라왔다.

15) 『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 6월 14일 을묘조, 「嶺南鮑作之輩, 惟利是甘, 署其妻子, 連續投入, 原其情狀, 極爲痛惋」 영남의 포작배(鮑作輩)들이 이익만을 탐해 처자를 거느리고 잇달아 적에 투항하니 그 정상을 지면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16) 『선조실록』 권24, 선조 23년 12월 23일 신묘조, 「黃海監司書狀: 吾父浦萬戶元景全, 長淵地大青島, 鮑作干等船隻衣糧, 為賊被奪, 以日次搜討將, 致令賊船恣行, 辭緣推考事」 황해감사(黃海監司)가 서장을 올리기를, “장연(長淵) 대청도(大清島)의 포작간(鮑作干)들이 선척과 의복·양식을 도적들에게 빼앗겼는데 오차포만호(吾叉浦萬戶) 원경전(元景全)은 일차수토장(日次搜討將)으로서 적선(賊船)으로 하여금 자행하게 하였으니 그러한 사연으로 추고하소서.”

우리나라의 여러 연해안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포작인(鮑作人)이란 용어는 「성종실록」 14년(1483) 12월 6일 기록에 처음 등장한 이후 그들에 대한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는 성종 16년(1485) 4월 12일 계해조 이후로의 사료 (1)~(3)과 같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영사(領事) 홍옹(洪應)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前日)에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 포작간(鮑作干)이 해변(海邊)에 장막을 치고 일정한 거처(居處)가 없이 선상(船上)에 기생(寄生)하고 있는데, 사람됨이 날래고 사나우며 그 배가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 없어서, 비록 폭풍(暴風)과 사나운 파도(波濤)라 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며, 왜적(倭賊)이 이를 만나도 도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납니다. … 연해의 여러 고을에서 봉진(封進)하는 해산(海產)의 진품(珍品)은 모두 포작인(鮑作人)이 채취(採取)하는 것입니다.<sup>17)</sup>

(2) “포작인(鮑作人)의 일을 지난번에 재상(宰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셨으나, 이 무리들은 본래 제주(濟州) 사람들입니다. 제주는 토지가 척박(瘠薄)하고 산업(產業)이 널널지 못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도망하여 오로지 해물(海物)을 채취하는 것을 일삼아 <이것을> 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데, 지금 만약 독촉하여 본 고장으로 돌려보내게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그대로 존무(存撫)하는 것이 편안하겠습니다.”하였다. … “이 무리들은 해물을 채취하여 매매(賣買)해서 살아가고, 간혹 여러 고을의 진상(進上)을 공급(供給)한다 하여, 수령(守令)들이 고의로 호적(戶籍)에 편입시켜 백성을 만들지 아니하고, 평민[齊民]들도 간혹 저들 가운데 투신하여 한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sup>18)</sup>

17)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 4월 12일 계해조

(3) 제주(濟州)에서 출래(出來)한 포작인(鮑作人)들은 본래 항산(恒產)이 없고 오로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업(業)을 삼아, 작은 배에 처자(妻子)를 싣고 해곡(海曲)으로 떠돌아다니며 우거(寓居)하는데, 이르는 곳이 만약 마음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곧 도망하여 흩어져서, 비록 거취(去就)가 일정함이 없으나, 부득이 연해(沿海)에 의지하여 머물면서 고기를 팔아 생활해 가니, 진실로 엄한 법(法)으로 다스릴 수 없으며, 또한 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sup>19)</sup>

위와 같은 「성종실록」의 기록을 보아 제주도 포작인들은 바다에서 고기와 해산물(海產物) 등의 채취를 업으로 삼고, 이를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교환, 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 남자어부로 설명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여러 고을의 해산(海產)의 진품(珍品)을 진상하는 역으로 동원되었던 사람이라 개념·정의 내릴 수 있겠다.

그렇다면, 바다를 공통의 생활무대로 하여 어류·해조류 등의 해산물 채취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어복(魚餕) 진상의 역을 담당하였던 포작인(鮑作人)과 잠녀(潛女)를 어떻게 구분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상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포작인과 잠녀와의 관계 고찰은 포작인의 기록이 잠녀보다 먼저 문헌상에 등장하였다는 점과 후에 포작인의 개념이 모호성을 띠고 잠녀와의 구분이 불분명해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추론할 가치의 여지가 보여진다.

이를 위해 김상현(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1601년)의 9월 22일 병자조와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1629년)를 차례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18)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1일 신묘조

19)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조

(1) 포작배(浦作輩)는 훌아비로 살다가 늙어 죽는 자가 많이 있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본주(本州)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의 공(公)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 그 몇 곱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일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익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었다.<sup>20)</sup>

(2) 해산(海產)에는 단지 생복(生鮆) · 오징어(烏賊魚) · 분과(分蟹) · 옥돔(玉頭魚) 등 수종이 있고, 이외에도 이름 모를 수종의 물고기가 있을 뿐으로 다른 어물은 없다. 그 중에서도 천(賤)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潛女)라고 한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sup>21)</sup>

남성인 포작인(鮑作人)은 주로 깊은 바다에서 전복을 잡아 이를 진상 조달하는 역을 담당하였음을 사료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 (2)에서 여성인 잠녀(潛女)는 미역 등의 해조류를 채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포작인(鮑作人)과 잠녀(潛女)와의 성별적 분업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겠다.<sup>22)</sup> 아울러 고문헌상에 포작인의 처(妻)로 여러 차례 잠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들이 부부로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sup>23)</sup>

20) 김상현(金尙憲), 「남사록(南槎錄)」 권1, 9월 22일 병자조

21) 이건(李健),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22) 일본에서도 나잡업으로 소라 전복을 캐는 남성과 여성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류의 생업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아마(海女·海士)'라고 한다. 일본 아마에 대한 표기에는 해인(海人) · 해사(海士) · 어인(漁人) · 잠녀(潛女) · 수인(水人) · 백수랑(白水朗)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최혜경 · 고창훈,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15쪽).

23) 이원진(李元鎮), 「탐라지(耽羅志)」 공장조(工匠條).

이익태(李益泰), 「지영록(知瀛錄)」 증감십사(增感十事).

이형상(李衡祥),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배비장전(裴裨將傳) : 조선후기 제주도를 배경으로 쓰여진 국문소설이다. 등장인

한편 포작인의 성격과 관련하여 고문헌에 나오는 포작인은 원래 제주도의 남자 어부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주도는 농경과 목축 등 토지에의 의존보다는 바다에 의존하여 어로와 교역에 종사한 제주인 남녀 모두가 상징적으로 포작인의 범주에 들어가며, 협의의 포작인 혹은 해인을 굳이 남녀 구별하여 호칭하고자 할 때는 남자를 포작부(浦作夫), 여자는 해녀(海女)라 하여 구별할 수 있다는<sup>24)</sup> 주장이 있다. 그러나 위의 주장과 같이 제주도의 해산물 채취에 종사한 남·녀 모두를 포작인이라 일컫는다면 문헌상 포작(鮑作)과 잠녀(潛女)를 굳이 구분지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사료되는 바이다.

이처럼 포작인(鮑作人)과 잠녀(潛女)에 대한 용어상의 구분은 명확히 정의 내려질 수 없으나, 시기의 변천에 따른 조선시대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둘의 개념적 관계에 대해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전기에 포작인은 전복 및 바다고기를 잡아 진상하는 역을 담당하는 어부(漁夫)로서 상징되어 오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들에게 과다한 전복 진상역과 과중한 군역이 부과됨으로 인해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포작인들이 행하던 전복 채취 및 해산물 진상역은 그들과 함께 공동선상에서 활동해 온 잠녀(潛女)들의 몫으로 전가(轉嫁)됨에 따라 포작인(鮑作人)과 잠녀(潛女)의 용어 및 관계적 의미의 구분이 모호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이들 포작인에 대해서 중세 동아시아 해역에서 이동성과 수적(水賊)집단의 성격을 갖는 해민(海民)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어 참고

---

물로 해녀와 포작이 부부로 등장하며 이들의 전복채취 모습과 함께 해산물 진상수탈의 힘겨운 삶을 묘사하고 있다.

24) 송성대, 「濟州人民의 海民精神」(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182쪽.

된다.<sup>25)</sup> 다카하시 기미아끼(高橋公明)<sup>26)</sup>는 「성종실록」 성종 3년 2월 27일 갑오조의 「경상도·전라도의 관찰사·수군절도사에게 도적이 발생하므로 이를 속히 포획하도록 유시하다.」라는 기록<sup>27)</sup>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수적(水賊) 행위가 왜인에게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주인, 즉 포작인도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포작인(飽作人)과 두독야지(豆禿也只)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그들은 유사한 생활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조선정부가 이들에 대해 제시한 대처방안을 고려할 때 이들 사이에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출륙 제주도민이라 명명되는 두모악과 포작인은 과연 동일 집단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의 기록을 근거로 이들의 상호 관련성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두모악과 관련한 조선 왕조실록의 최초의 기사는 「성종실록」 성종 8년 8월 5일 기해조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후 「성종실록」 8년 11월 21일 갑신조와 「성종실록」 23년 2월 8일 기유조에서도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 지금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도내의 사천(泗川)과 고성(固城)·진주(晉州) 지방에, 「제주(濟州)의 두독야(豆禿也)」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2, 3척의 배를 가지고 출래(出來)하더니 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sup>28)</sup>

25)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110쪽.

26) 고교공명(高橋公明), 「中世東亞世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濟州道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8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114~115쪽.

27)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27일 갑오조

28) 「성종실록」 권83, 성종 8년 8월 5일 기해조

(2) 근년에 제주(濟州) 세 고을의 인민(人民)이 자칭 두독야지(豆禿也只)라 하면서 처자(妻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경상도·전라도의 바닷가 연변(沿邊)에 옮겨 정박(碇泊)하는 자가 수 천여 인이다.<sup>29)</sup>

(3) 또 연해(沿海)에는 두무악(頭無岳)이 매우 많은데, 제주(濟州)의 한라산(漢拿山)을 혹 두무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주 사람을 두무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두독(頭禿)이라고 쓰기도 합니다.<sup>30)</sup>

위의 「성종실록」 기사를 통해 두독야(豆禿也)·두독야지(豆禿也只)·두무악(頭無岳)이라 칭하는 이들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두무악(頭無岳)<sup>31)</sup>이란 용어는 조선전기 인문자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전라도 제주목 산천조에 기록된 “한라산(漢拏山)은 주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鎮山)이다. 한라(漢拏)라고 말하는 것은 운한(雲漢)을 나인(擎引)할 만하기 때문이다. 혹은 두무악(頭無岳)이라 하니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圓山)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기 때문이다”는 기사를 근거로 두무악(頭無岳)은 곧 한라산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종실록」 기사에서는 한라산을 지칭하는 두무악이 제주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그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경상도·전라도 해안에 무리를 지어 정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영국(韓榮國)의 「豆毛岳考」에 의하면 두모악이란 원래는 한라산

29) 「성종실록」 권86, 성종 8년 11월 21일 갑신조

30) 「성종실록」 권262, 성종 23년 2월 8일 기유조

31) 김상현의 「남사록」과 이원진의 「탐라지」, 김성구의 「남천록」 등에서도 이와 같은 두무악(頭無岳)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을 두무악 또는 두모악이라고도 칭한 데서 말미암은 제주도인에 대한 속칭이었지만,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는 이른바 출륙 제주도민, 즉 원주지인 제주도를 불법적으로 이탈하여 주로 전라·경상도 연해지역에 거주하던 제주도민을 가리키는 공식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두무악(頭無岳)' 등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명명되어지는 두독야(豆禿也)·두독야지(豆禿也只)·두모악(頭毛岳)·두독(頭禿)은 모두 출륙 제주도민을 지칭하고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를 두무악(頭無岳) 집단은 포작인과 동일시되는 존재로서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된다. 「성종 실록」 성종 4년 3월 28일 무오조 기사와 「중종실록」 중종 17년 6월 신축조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가 있다.

(1) “제주(濟州)는 바다로 둘려 있어 사면에서 적을 받게 되므로 방어가 가장 긴요한데, 요즈음 흥년으로 말미암아 군민(軍民)이 유산(流散)하여, 지금 전라도의 연변(沿邊) 여러 고을로 옮겨 사는 자가 많습니다. 이미 본 도의 관찰사(觀察使)를 시켜 추쇄(推刷)하여 합계한 것이 양인(良人) 91, 정병(正兵) 3, 선군(船軍) 12, 공천(公賤) 29, 사천(私賤) 17입니다. 그 중에서 사천과 신역(身役)이 없는 양인은 억지로 돌아오게 할 것 없으나, 군역(軍役)이 있는 사람과 공천은, 청컨대 모두 쇄환(刷還)하게 하소서.”<sup>32)</sup>

(2) “제주 사람들은 비록 포작간이 아니더라도 유랑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으니, 포작간들을 쇄환할 것이 없습니다.”<sup>33)</sup>

32) 「성종실록」 권28, 성종 4년 3월 28일 무오조

33)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신축조

위의 사료(1)과 (2)에서 나타난 기사의 내용처럼 출륙 제주도민인 두무악(頭無岳)이 양인·선군·공천·사천 등 다양한 계층이 담당 역을 피해 전라도 해안지역으로 옮겨 살고 있음을 볼 때, 두무악(頭無岳)과 포작인(鮑作人)이 동일한 존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겠다. 또한 당시 조선시대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출륙 제주도민(두모악)의 대다수가 포작인(鮑作人)인 일 가능성은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두모악이 곧 해물을 채취하고 진상 역을 담당하는 한정된 의미의 포작인(鮑作人)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출륙 제주도민과 포작을 엄밀하게 구분지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두모악과 포작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 III. 포작인의 출륙과 존재양태

#### 1. 포작인 출륙의 사회·경제적 배경

출륙 제주도민을 뜻하며 두모악으로 불리던 이들 가운데에는 국가에 진상용 추복(追復)과 인복(引復) 및 다양한 종류의 어복 조달을 담당한 포작인(鮑作人)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과연 무슨 이유에서 자신의 본거지를 뒤로하고 육지로 대거 출륙해 나가야만 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열악했던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상현(金尚憲)은 「남사록(南槎錄)」<sup>34)</sup>에서 제주도의 열악한 자연환경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 (1) 땅에 바위와 돌이 많아 흙이 두 어치 퍼진데 불과하고, 또 흙이 가볍고 건조해서 밭은 개간하는 데는 반드시 우마(牛馬)를 몰아 밟는다. 그리고 목면(木棉)과 마포(麻布)가 생산되지 않아 의식(衣食)이 모자라니, 오직 해물(海物)을 캐어 생업을 버금하고 있다.
- (2) 삼읍(三邑)이 모두 한라산 밑에 있어서 평토(平土)는 반묘(半畝)도 없고 밭을 가는 자는 고깃배를 에는 듯해야 한다.
- (3) 농기(農器)가 매우 좁고 작아서 어린아이 장난감 같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흙이 두 어치 속에만 들어가도 다 바위와 돌이므로 깊이 갈 수 없다고 한다.

이렇듯 제주도는 사면대해풍재(四面大海風災)와 산고심곡수재(山高深谷水災) 및 석다박토한재(石多薄土旱災) 등 소위 삼재(三災)로 말미암아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시키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때문에 제주도민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산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쌀·베·소금 등과 교역하며 생계를 이어 나갔다.

제주의 열악한 자연적 조건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조선정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다. 특히 제주의 자연재해는 유기적·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가져옴에 따라 제주도민의 삶은 더욱 궁핍해져 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출륙 포작인이 출현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궁핍한 생활여건은 15세기 이후 조선왕조의 중앙

집권적 지배체제가 점차 확립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어 갔다. 더욱이 제주도에 파견된 중앙의 관리들과 제주도의 토호세력에 의한 수탈까지 겹쳐서 도민들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그 지역이 협소하고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잡역(雜役)·잡세(雜稅)는 해마다 증대되고 있었다.<sup>35)</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은 포작인들은 사활을 건 출륙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포작인이 출륙하게 되는 경제적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포작인에 대한 공물(貢物)·진상(進上)의 과중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관리들의 포작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탈을 들 수 있다. 그들에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수취체제의 실태와 폐단은 김상현(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과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광해군일기」의 아래와 같은 기록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1) 본주(本州)에서 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의 공(公)을 빙자하여 사육을 채우는 것이 또 그 몇 굽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일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의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나 정령 공옹(供應)은 전보다 줄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 이웃에 사는 홀어미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빌어먹다가 스스로 죽을지언정 포작인(浦作人)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sup>36)</sup>

(2) 그들은 생복을 잡아다가 관가 소징(所徵)의 역(役)에 옹하고 그 나

35) 권인혁,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 『탐라문화』 제7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133쪽.

36) 김상현(金尙憲), 「남사록(南槎錄)」 권1, 9월 22일 병자조

머지를 팔아서 의식(衣食)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생활의 간고(艱苦)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불렴(不廉)의 관의 있어 탐오지심이 생기면 명목을 교묘히 만들어 징색(徵色)하기를 수없이 하므로 1년간의 소업으로서도 그 역에 응하기가 부족하다. 하물며 소속 관청에 수납(輸納)의 고통과 이서(吏胥)의 무간(無奸)이 폐가 끝이 없으니 또 무엇으로서 의식의 자(資)를 바라리오.<sup>37)</sup>

(3) 선혜청이 아뢰기를, 의금부 도사 한명우(韓明勛)이 명을 받들고 제주에 갔더니, … 또 전일에 목사들이 해적(海賊)의 상황을 정탐한다는 구실로 군관을 내보내 많은 포작인(鮑作人)을 인솔하고 떠나 오랫동안 도서(島嶼)에 머물며 생전복을 따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진상만을 위해서가 아니며 사사로이 쓰여 지는 것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sup>38)</sup>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포작인들이 부담하여야 했던 전복 진상의 수는 그들에게 터무니없이 과중하게 부과되어졌으며, 더불어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적 상황으로 인해 포작인들의 출륙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부과되어졌던 공물·진상 실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였을까. 이를 위해 조선시대 포작인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납하여야 했던 해산물 진상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 그 내역에 따른 수효에 대해서 각 문헌을 통해 시기별로 검토하고자 하며, 포작인들의 출륙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17세기 전반 제주어사로 파견되었던 김상현의 「남사록(南槎錄)」 기록을 선두로 하여 조선시대 변천과정에 따른 해산물 진상의 구체적인

37) 이건(李健),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38) 「광해군일기」 권10, 광해군 즉위년 11월 3일 병술조.

실상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17세기 전반 - 김상현의 「남사록(南槎錄)」(선조 34년, 1601년)

〈표 2〉 17세기 전반 제주삼읍 해산물의 진상 내역

지역	구분	진상 내용
제주	별진상	추복(槌餽) 3,030첩(貼), 조복(條餽) 230첩, 인복(引餽) 910주지[注之], 오징어[烏賊魚] 680첩
	사재감(司宰監) 공물	대회전복(大灰全餽) 500첩, 중회전복(中灰全餽) 945첩, 소회전복(小灰全餽) 8,310첩
	별공물	대회전복(大灰全餽) 1,000첩, 중회전복(中灰全餽) 700첩
대정		대회전복(大灰全餽) 500첩, 중회전복(中灰全餽) 250첩
정의		대회전복(大灰全餽) 500첩, 중회전복(中灰全餽) 195첩

(자료 : 김상현(金尙憲), 「남사록(南槎錄)」)

위의 〈표 2〉를 통하여 조선전기 대동법 실시 이전의 제주도 해산물 진상의 실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제주도의 공물 상납은 주로 별진상(別進上)과 별공물(別貢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39)</sup> 또한 〈표 2〉에 나타난 진상물은 모두 “삼읍의 포작으로부터 취해지며, 기타 해채(海菜) 및 수령의 봉송(封送)하는 수량은 이 한(限)에 있지 아니하므로 전도(全島)의 물력이 거의 여기에 없어진다”<sup>40)</sup>고 기록됨에 따라 제주지역의 해산물 진상은 포작인들에게 부과되어졌으며, 이들이 겪는 진상부담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

39) 박찬식, 「19세기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 『탐라문화』 제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1996), 258쪽.

40) 김상현, 「남사록(南槎錄)」 권1, 9월 22일 병자조, 「此皆取辦於三邑浦作而其他海菜及守令封送之數 不在此限 一島物力殆盡於此矣」

겠다.

이어 17세기 전반의 포작으로부터 취해지고 있는 해산물 진상 품목은 크게 추복(鰐鮋) · 조복(條鮋) · 인복(引鮋) · 회전복(灰全鮋) 등의 전복과 함께 오징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회전복은 그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뉘어 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추복이란 방망이로 두드려가면서 말린 전복으로 추포(椎鮑)라고도 일컫는다. 조복은 '오리'와 같이 가늘고 길게 썰어 말린 전복으로 여겨지며, 인복은 납작하게 폐서 말린 전복으로 건복(乾鮋)이라고도 칭한다.<sup>41)</sup>

이렇듯 포작이 진상하는 전복의 종류와 매우 다양한 가운데, 추복과 인복의 전수(全數)를 마련함에 있어 이는 모두 매우 드문 종류였으며, 또한 채득(採得)할 때에도 매우 힘이 들었다. 혹 재료를 얻었더라도 포작인들이 직접 만들 수 없으므로 솜씨가 좋은 사람을 빌려서 세(貲)를 주고 만들어야 했다. 따라서 전복 값과 사람을 빌리는 값을 합하면 1인당 1달삯을 빌리기 위해서는 거의 1필의 역(役)이 소요되었고, 그러한 것이 한 달에 8차례나 되었으므로 이는 1년에 8필의 역에 해당하는 것이다.<sup>42)</sup> 이에 포작인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부과되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표에서 보여지는 위의 전복들은 모두 말려 가공한 상태로 바쳐졌는데, 이는 생복으로 바칠 경우 운반 과정에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마른전복이 지니는 효능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조치라 생각되어 진다.

41) 이원진 씀 · 김찬흡외 옮김, 「(역주)탐라지」(푸른역사, 2002), 164쪽.

42) 양진석, 「18 · 19세기 제주의 収取制度와 特徵」, 「탐라문화」 제24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116쪽.

## (2) 17세기 중반 -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효종 4년, 1653년)

〈표 3〉 17세기 중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구 분	종류 시기	추복(槌餽)	조복(條餽)	인복(引餽)	미역 [粉薑]	미역귀 [薑耳]	오징어 [烏賊魚]
월령 (月令)	2월령	265첩 <sup>43)</sup>	265첩	95속(束)	-	-	-
	3월령	240첩	-	85속	40속	2석 5두	-
	4월령	760첩	-	170속	-	-	-
	5월령	760첩	-	170속	-	-	-
	6월령	1,108첩	-	170속	-	-	215첩
	7월령	680첩	-	170속	-	-	430첩
	8월령	680첩	-	170속	-	-	258첩
	9월령	425첩	-	85속	-	-	172첩

(자료 : 이원진(李元鑑)의 「탐라지(耽羅志)」)

## 43) 조선시대 해산물 진상의 수량 단위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문의 단위		현대의 환산치	비 고
량(量) 부피	1말=1두(斗)=10되	6300ml	○ 흠 (합, 合): 1되의 1/10
	1되=1승(升)=10흡	3흡 5작 = 630ml	○ 되 (승, 升): 1말의 1/10
	1흡=1합(合)=10작	63.0ml	○ 말 (두, 斗): 1되의 10배 ○ 섬 (석, 石): 1말의 10배
형(衡) 무게	1근(斤)=16양(兩)	641.9g	
	1양(兩)=10돈	40g	
	1균(鈞)=30근(斤)	-	
	1石=4균(鈞)	-	
기타	1첩(貼)	'첩'의 차자 표기로, 물고기나 전복 따위의 묶음을 한 단위로 이르는 말이다. 종류에 따라 10개 또는 100개를 한 단위로 한다.	
	1속(束)	束은 '못'의 차자 표기로, '묶음'을 낱개로 세는 단위이다. 물고기는 열 마리의 묶음을 한 뜻이라 하고, 미역은 대개 50개를 한 뜻이라 한다.	
	1장(張)	펼이 없는 가죽 외에 보통 얇은 물건을 셀 때 쓰는 단위이다.	
	1개(箇)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	
	1주지(注之)	'주지'의 차자 표기로 미역·다시마의 한 묶음을 이르는 말, 또는 인복의 한 묶음[束]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炸·注乙[隻]로도 표기된다.	

(강영봉, 「固有語彙 研究-〈耽羅營事例〉와 〈濟州事例〉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를 참조하여 표 작성.

17세기 중반인 조선후기에 이르러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상공은 대부분 미납(米納)으로 바뀌어 갔다. 그러나 위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별공과 진상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현물로 상납하는 형식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조선후기에 와서 제주도의 진상부담은 더욱 체계화 되어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up>44)</sup> 이 때, 월령(月令)이란 달이 정해진 예에 의하여 지방에서 나는 물건을 국왕에게 바치는 것으로, 제주도는 2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계속 진상되고 있다. 그 해산물 진상 종류로는 전복과 미역, 오징어 등으로 나타난다. 미역은 미역을 말린 후 분말로 만든 분과(粉葛)과 미역귀를 칭하는 꽈이(葛耳)로 구분하여 진상되어졌다.<sup>45)</sup>

### (3) 18세기 전반 - 이형상, 『남한박물(南宦博物)』(숙종 29년, 1703년)

#### ○ 18세기 전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추복(槌復) 3,900여첩, 조복(條復) 260여첩, 인복(引復) 1,100여첩, 회전복(灰全復) 3,860여첩, 도합(都合) 9,100여첩과 오징어[烏賊魚] 860여첩 및 분과(粉葛) · 조과(早葛) · 꽈이(葛耳) 등의 일이 모두 이 80여명 포작인에게서 나옵니다.

위의 『남한박물』 기록을 통해, 제주에서 진상되어지는 주된 해산물은 전복이며, 이러한 전복채취는 80여 명의 포작에게 부과되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의 해산물 진상 내역인 <표 3>과 비교 해 보았을 때, 그 양이 급격히 감소됨을 살필 수 있다.

44) 박찬식, 「『耽羅巡歷圖』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耽羅巡歷圖研究論叢』(탐라 순례도연구회, 2000), 103쪽.

45) 『향토사교육자료』(제주도교육연구원, 1996), 148쪽.

## (4) 18세기 후반 - 「제주대정정의읍지」(정조 17년, 1793년으로 추정)

〈표 4〉 18세기 후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구 분	종류 시기	추복(糙飯)	조복(條飯)	인복(引飯)	오징어
월령(月令)	2월령	113첩	113첩	30속(注之)	-
	3월령	113첩	-	27속	-
	4월령	245첩	-	54속	-
	5월령	245첩	-	54속	-
	6월령	190첩	-	54속	73첩
	7월령	189첩	-	54속	139첩
	8월령	189첩	-	54속	88첩
	9월령	139첩	-	27속	64첩

(자료 :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진공조)

「제주대정정의읍지」의 진공조에 나타난 18세기 후반 해산물의 진상 내역은 다음 <표 4>와 같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17, 18세기의 해산물 종류 가운데 분과 · 조과 · 꽈이 등의 미역을 제외시키고 있음으로써 추복, 조복, 인복 및 오징어만을 진상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남 환박물」에서의 각 해산물의 수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전 시기보다도 절반가량 그 액수가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19세기 전반 - 「탐라사례(耽羅事例)」(순조 27년, 1824년 이후 시기로 추정)

〈표 5〉 19세기 전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구 분 시기	종류 지역	추복(鮓鰐)			조복(條鰐)			안복(引鰐)			오징어
		州 先手措備 <sup>46)</sup>	旌義※	총계	州※	旌義※	총계	州※	大靜※	旌義※	
월령 (月令)	2월령	67첩	40첩	107첩	67첩	40첩	107첩		32속		32속
	3월령	73첩	34첩	107첩			-		20속	9속	29속
	4월령	159첩	76첩	235첩			-		42속	16속	58속
	5월령	160첩	75첩	235첩			-		52속	6속	58속
	6월령	128첩	50첩	178첩			-		46속	11속	57속
	7월령	117첩	60첩	177첩			-		46속	11속	57속
	8월령	113첩	63첩	176첩			8속	41속	8속	57속	85첩
	9월령	87첩	45첩	132첩			-		24속	5속	29속
											60첩

(자료 : 「탐라사례(耽羅事例)」공현조)

〈표 5〉는 1824년 이후 시기로 추정되는 19세기 전반의 「탐라사례(耽羅事例)」에 나타난 해산물의 진상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1841~1843년 사이에 편찬된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기재된 해산물의 진상 수량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탐라지초본」에 나타난 해산물 진상의 내역표를 생략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탐라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한다. 「탐라사례」 공현조 2월령의 추복, 조복과 관련해서 “搘鮓一百七貼, 六十七貼, 自平役, 每貼二斗式, 州善手措備, 四十貼,”

46) 이원진, 「탐라지초본」工匠條 鮑作에 「進上搘引鮓及官用魚鮓皆令鮑作擔當令則進上善手禮吏處給價備納官用私貿先手措備」 진상 추인복 및 관용 물고기·전복 모두를 포작에게 명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명한 즉, 진상 선수 예리는 관용으로 쓸 비품을 개인에게 사서 공급가격으로 처리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이에 위 표에서 선수 조비(善手措備)을 생략하여 ※ 표시로 나타낸다.

旌義善手措備”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포작의 고역을 완화시키기 위해 영조 14년(1738)의 평역고의 설치와 그 관련성을 지니며, 그들이 관청으로부터 역가(役價) 명목으로 받은 것은 추복·인복 매첩 당 米 2두씩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복은 매 주지(注之)당 米 2두 5승의 역가를 지급받았고, 오징어는 매 첨의 가격이 2두이며 이는 평역고로부터 출급되어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가의 지급은 관청에 진상물을 제공해야 하는 그들의 역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6) 19세기 중반 - 「탐영사례(耽營事例)」(칠종 5년, 1854년 직후시기로 추정)

〈표 6〉 19세기 중반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

구 분 시기	종류 지역	추복(追餉)			조복(條餉)			인복(引餉)			오징어
		州 先手措備	旌義 ※	총계	州 ※	旌義 ※	총계	州 ※	大解 ※	旌義 ※	
월령 (月令)	2월령	80첨	44첨	131첨	80첨	44첨	131첨		32속		32속
	3월령	87첨	44첨	131첨			-		20속	9속	29속
	4월령	189첨	95첨	284첨			-		42속	16속	58속
	5월령	189첨	95첨	284첨			-		52속	6속	58속
	6월령	144첨	72첨	216첨			-		46속	11속	57속
	7월령	143첨	72첨	215첨			-		46속	11속	57속
	8월령	142첨	72첨	214첨			-	8속	41속	8속	57속
	9월령	105첨	50첨	155첨			-		24속	5속	29속
(자료 : 「탐영사례(耽營事例)」공현조)											

〈표 6〉은 19세기 중반 해산물 진상 내역을 「탐영사례」에 의거하여 작성한 표이다. 이는 19세기 전반의 해산물 진상 내역을 나타낸 〈표 5〉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추복과 조복은 제주목과 정의현 진

상 선수예리에게 준비토록 하였으며, 인복은 제주목을 비롯한 양현(兩縣)의 선수예리가 담당하였다. 한편, 그 수량적인 면에서 <표 5>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인복은 양적변화가 없으나 그 나머지 추복, 조복, 오징어의 양이 감소되어 책정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포작인의 진상한 해산물(海產物)의 진상 실태를 정리해 본 결과, 17세기 전반~19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별 해산물의 진상 품목과 수량의 변화양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포작인들의 담당하였던 해산물 진현(進獻)의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는 품목은 전복과 오징어이고, 달마다 월령(月令)으로 바쳐야 하는 추복(搘鰐)과 조복(條鰐), 인복(引鰐) 등과 같은 전복류의 진상은 2월에서 9월 까지 이루어 졌으며, 오징어는 6월에서 9월까지 진상되고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위의 해산물 진상의 전체적인 수량 변화를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조선시대 제주지역 진상 해산물의 수량 변화<sup>47)</sup>

(단위 :貼)

연대 전거 종류	17세기 전반	17세기 중반	18세기 전반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19세기 중반
	남사록 (1601)	탐라지 (1653)	남한박물 (1703)	제주대정 정의읍지 (1793)	탐라사례 (1824)	탐영사례 (1854)
추복(搘鰐)	3,030	4,918	3,900여	1,423	1,347	1,630
조복(條鰐)	230	265	260여	113	107	131
인복(引鰐)	910	1,115	1,100여	354	377	377
오징어[烏賊魚]	680	1,075	860여	364	349	414

47) 「남사록」, 「탐라지」, 「남한박물」,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사례」, 「탐영사례」의 자료를 참고로 표 작성.

이상 <표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정부의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어져감에 따라 포작인에게 주어지는 해산물의 양이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전·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진상 해산물의 수량이 급격히 격감되고 있으며, 이는 19세기에 넘어오면서 수량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17, 18세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양적으로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 표에 보이는 규정이외에도 수시로 부과되는 별진상용 전복,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사적으로 징수하는 전복도 포작인들이 채취하여야만 하였으며, 수령(首領)을 비롯한 지방 관리들은 진상제도를 사리추구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 징수량은 국가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증대되고 있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sup>48)</sup> 여기서 해산물 진상액수의 급격한 감소 현상은 포작인(鮑作人)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며, 이러한 조선정부의 양감(量減)정책 실시의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3. 조선정부의 출륙 포작인에 대한 대책'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포작인 출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위와 같은 공물·진상의 과중한 수취체제의 폐단과 더불어 포작인에 대한 역(役)의 과중함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에는 소위 6고역(六苦役)이라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주도 지역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여섯 가지 직역을 총칭해서 부르는 보통명사의 의미를 갖는다.<sup>49)</sup> 이러한 6고역에 포작(鮑作) 직역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조선시대 포작인들이 겪은 사회·경제적 고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진상용

48) 나가모리 미쓰노부(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 제23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140~141쪽.

49) 김동전,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 :『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1995), 152쪽.

전복과 관아용 어복 조달을 담당한 포작(鮑作)은 그 진상액이 과다하고, 아울러 관리들의 빙공영사(憑公營私)로 말미암아 목자(牧子) 못지않은 고역을 치러야 했다.<sup>50)</sup> 이형상의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지아비는 포작으로서 겸하여 선격 등 허다한 괴로운 일을 행합니다. 저는 잠녀로서 1년 동안의 진상 미역과 전복 공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고역이 됨이 목자들보다 열배나 됩니다. 대개 1년 통틀어 계산해 보면 포작의 공납하는 값을 20필을 내려가지 않고, 잠녀들이 공납하는 바는 7~8필이 됩니다. 한 집안에서 부부의 공납하는 바가 거의 30여 필에 이르니, 갯가의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형세가 진실로 그러한 바 있습니다. 중년(中年) 이상에서는 포작의 본디 숫자가 많게는 3백여 명에 이르렀으므로 혹 같히고 혹 곤장을 맞더라도 오히려 책임에 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인 즉 다만 88명뿐이고, 부모 상(喪)에 있거나 여러 탈이 있어서 이 중에서 그 실제 부역하는 바는 더욱 극심히 영성(零星) 합니다.<sup>51)</sup>

위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포작인들은 전복 진상뿐만이 아니라 격군(格軍)으로 징발되어 나가는 등 잡역(雜役)의 부담을 져야만 하였다. 그래서 포작인들은 과중한 역(役)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역행위를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8백여 명에 달하던 포작인들이 80여명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피역을 하지 못한 포작인들은 피역자의 몫까지 모두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컸었다고 할 수 있겠다.<sup>52)</sup>

50) 권인혁,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哲宗朝 濟州民亂과 관련하여」, 『이원순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교학사, 1986), 298쪽.

51) 이형상,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지금까지 논의한 제주도의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말미암은 생활고와 함께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통치 강화에 따른 공부(貢賦)의 증대 및 격심한 관부의 수탈은 결국 포작인들이 제주를 떠나 출륙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어찌 보면 그들의 출륙이 주어진 환경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의 능동적인 해양활동 의미보다는 수동적인 해양활동으로 인식될지 모르겠으나, 자의에 의해서 주어진 역경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갔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포작인들이 '출륙'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 2. 출륙 포작인의 실태

조선 중기에 이르러 제주지역 포작인(鮑作人)들은 공물 진상 부담의 가중과 가혹한 노역 징발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출륙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어디로 이동해 갔으며, 그곳에서의 존재 양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출륙하여 경상도·전라도 연해안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마련한 포작인 그룹의 실태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포작인(鮑作人)들이 제주에서 와서 전라도·경상도 두 도의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데, 몰래 도둑질을 하니 그 조짐이 염려스러우나, 다만 현재 드러난 죄상(罪狀)이 없으므로 죄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록 본토

52) 권인혁, 「조선후기 지방관아 재정의 군영실상-제주의 <사해>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100쪽.

(本土)로 쇄환(刷還)시키고자하나 반드시 생업(生業)에 안주하지 못할 것 아니, 청컨대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만호(萬戶)로 하여금 선척(船隻)에 자호(字號)로 표(標)를 붙이고, 바다에 나갈 때에는 노인(路引)을 주도록 하되, 만일 노인이 없거나 혹은 표가 없는 배를 타고 마음대로 출입하면 해적(海賊)으로 논하여 중한 법으로 처치하도록 하소서<sup>53)</sup>

(2) 신이 듣건대 바다 연변에 와서 사는 제주(濟州) 사람에게 수령이 역(役)을 정하지 아니한 자를 이제 감사(監司)로 하여금 추국(推鞫)하여 죄를 논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신이 이 사람을 보니 본래 농업은 아니하고 오로지 고기를 잡아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 수령이 복작간(鰐作干)이라고 일컫고 모든 진상(進上)하는 해물(海物)은 오로지 이 사람을 의뢰하여 채포(採捕)함으로 인하여 사랑해 보호하고 그 사람도 수령이 그를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만약 침책(侵責)을 당하면 다른 고을로 옮겨서 정처 없이 옮기는 것이 예사입니다. … 이 같은 사람이 몇 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sup>54)</sup>

위의 (1) 기록으로 보아 출륙 포작인들은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에 산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의 성종 20년 기록에서 경차관 이의(李誼)가 복작간(鰐作干)의 역을 지고 정주하고 있는 전라도 내의 포작인만도 그 수가 「不知其千人」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한반도 남해안으로 떠나간 포작인들의 숫자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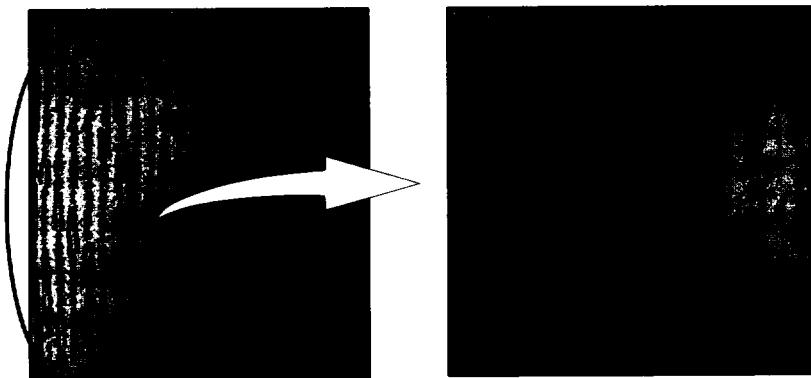
이와 같이 양남 연해(兩南 沿海)에 정착한 포작인들은 소주지(所住地) 지방관아로부터 녹안(錄案)되어 포작(鮑作) 역(役)을 담당하면서 소거(所居) 군현(郡縣)의 정식 주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한영

53) 『성종실록』 권161, 성종 14년 12월 6일 을축조

54)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 3월 15일 계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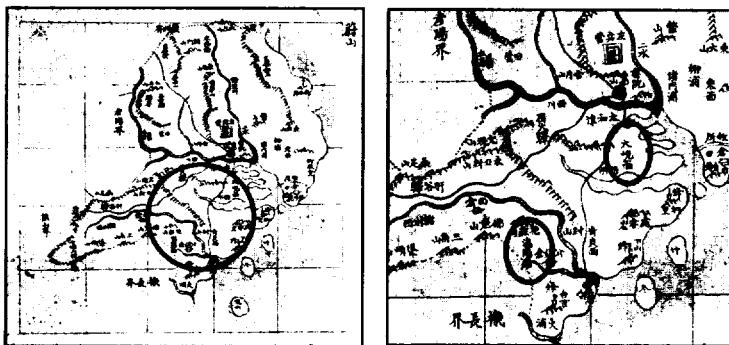
국의 「豆毛岳」考에서는 현존하는 17, 18세기의 호적대장인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 가운데 1609년(광해군 원년) · 1672년(현종 13) · 1684년(숙종 10) · 1705년(숙종 31) · 1708(숙종 34)년도 5式年分 5冊에 나타나는 두모악(豆毛岳)의 실체를 파악해 놓고 있다.

〈그림 1〉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 中 두모악 기재의 예



〈그림 1〉은 두모악 명칭이 호적에 처음 등장한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 중 일부의 기록을 표시한 것이다. 이 호적에서 두모악의 존재는 울산의 부내면(府內面) 1호수, 대대여리(大垈如里) 2호수, 온양리(溫陽里) 9호수로 총 12호수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기록된 명칭 모두 '豆毛岳'이라 칭하고 있다.

〈그림 2〉『조선지도』中 경상도 울산(蔚山)



제주의 두모악들이 집주하고 있는 곳을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2>와 같으며, 이들은 울산의 해안 마을을 중심으로 정주해 살았음을 이 지도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蔚山府 古跡條를 보면 울산은 토양이 기름지고, 수산물과 소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 가운데 부자가 된 집이 많다고 적고 있다.<sup>55)</sup> 이러한 기록은 제주도 유이민인 두모악들이 울산 지역으로 이거·정착해 나간 배경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15세기 말엽 양남 연해 지역으로 출륙 정착한 포작인들은 언어와 습속 등 생활양식의 상이로 인하여 그 곳 주민들로부터 기피되었고, 또 정부로부터도 치안상 우려되어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두모악의 상당수가 출륙 포작인(鮑作人)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진상 해물 채납의 포작(鮑作) 역(役)을 전담하면서 본래의 남해안 주민들과 격리된 가운-

5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蔚山府 古跡條 古邑城 細註, 「이섬(李)의 記에 '울주는 옛 興麗府이다. … 땅이 기름지고 또한 물고기와 소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 가운데 앉아서 부자 된 집이 여럿이다. 이에 나라에서 쓰는 비용이 많이 나 수 천에 이르렀고, 해산물을 바치는 것도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데 그들만의 집단부락을 형성하며 살아갔다. 이는 1609년 경남 울산 호적대장 중 ‘두모악’이 등장하는 통호수에 집중적으로 유민(流民)과 해부(海夫)·해척(海尺)의 명칭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천인시 되어 그들 나름의 특수부락을 이루하고 생활하여 왔다는 것을 파악하게 한다.

다음 <표 8>은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12가구(家口) 내 두모악(豆毛岳)들의 실태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호주(戶主)를 비롯한 그의 처(妻)의 집안 대부분이 두모악으로서 폐쇄적인 통혼권을 보여주는 신분내혼 양상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호주의 평균나이는 47.8세, 그의 처(妻) 평균나이는 43.7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609년 호적 대부분의 두모악호가 노비호의 호적 기재양식에 준하여 기록되어져 있었다. 12戶의 두모악호 가운데 양인 호적양식으로 기재된 것은 부내면의 호주 김삼동(金三同)과 대대여리의 호주 김분손(金粉孫), 그리고 온양리의 호주 만동(萬同) 등이며, 나머지 9戶는 모두 노비호적양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호적에 기재된 두모악 대부분이 名과 함께 姓을 구록(具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이 노비나 천인으로 처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가구를 제외한 호주와 처의 본관이 울산·동래·창원·옹천 등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출신지인 제주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정착지역의 지명으로 모록(冒錄)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이행을 획득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된다.

## 40 軌羅文化 32호

〈표 8〉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에 나타난 두모악(豆毛岳)의 실태

형성		주소				가족關係	夫	부(父)와 四祖			
								本官	職役	姓名	本官
血名	里名	職役	姓名	나이	本官		本官	職役	姓名	本官	職役
宥內北	美良	豆毛岳	金一國	3	울산	妻: 豆毛岳 金全(53세) 妾女: 韓惠	울산	豆毛岳	吉音同	豆毛岳	三甲
大厚 如里	大厚	*	豆毛岳	38	울산	妻: 良女 同合(34세) 生子: 韓英(10세)	無	*	吉音同	無	金孫
		*	金均經	46	울산	妻: 豆毛岳 金應德(47세) 所生男: 粉允(23세)	無	*	吉音同	無	進石
	金連	*	金連	52	옹진	妻: 豆毛岳 金連德(48세)	옹진	*	翁同	豆毛岳	德春
		*	金連	44	울산	妻: 金連 著音德(33세) 子: 金連 奉 李春石	울산	*	翁同	豆毛岳	金連
	金連	*	金連	50	울산	妻: 豆毛岳 明全(37세) 妾女: 麼同(6세)	울산	*	翁同	豆毛岳	明進
		*	者音士	35	울산	妻: 豆毛岳 金代(31세) 妾女: 金連(24세)	동래	*	翁同	豆毛岳	金伊
	金連	*	金連	33	동래	妻: 豆毛岳 金大印(29세)	울산	*	連	豆毛岳	月
		*	金連	53	울산	妻: 豆毛岳 金連(46세) 生子: 金全(23세)	울산	*	連	豆毛岳	九進
	金連	*	金連	44	창원	妻: 豆毛岳 金連(35세)	창원	*	連	豆毛岳	達鳳
		*	者音士	35	울산	妻: 豆毛岳 也音(35세) 妾女: 金連(7세)	동래	*	連	豆毛岳	人全
	*	萬國	(65)	제주	妻: 金連 金慶(57세) 子: 義媛居 李連男	無	*	萬國	豆毛岳	萬國	

\* □은 호적의 서지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판별이 불가능한 글자이고, ?은 호적이 해손되어 화인이 불가능한 글자이다.

56) 울산 남면 온양리의 9戶 가운데 마지막 호를 제외한 8戶는 호주의 사조(四祖)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父母의 그 직역과 名만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라 표시한 부분은 祖가 아닌 母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밝힌다. 또한 위 <표 8>은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대장』을 참고로 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제의 四祖								
曾祖		外祖			父		祖(母)		曾祖		外祖			
職役	姓名	職役	姓名	本官	職役	姓名	職役	姓名	職役	姓名	職役	姓名	本官	
不知	豆毛居	金通金	율산	豆毛居	吉音孫	豆毛居	南孫	不知	豆毛居	金通金	율산			
*	金同	不知			*	莫同	*	莫石	不知		不知			
不知	豆毛居	金通金	無	*	內隱同	無	彦採	無	豆毛居	金通金	無			
				*	同	*	召史							
				私奴	萬達	*良女	召史							
				豆毛居	山同	*豆毛居	漢之							
				*	金達	*	召史							
				*	左山	*	命達							
				*	文達	*	令達							
				*	粉孫	*	□德							
				*	朴乞	*	元達							
不知	?	?	제주	無	先同	*私婢	□非							

두 번째로, 그들이 지난 우수한 해양사적 능력에 따라 조선정부로의  
격군(格軍), 즉 수군(水軍)으로 편입된 부류<sup>57)</sup>를 들 수 있다. 바다와 함

57) 충무공 이순신 유고 전집인 「이충무공전서」의 당포대첩·한산도대첩·부산포대첩  
에 대한 장계의 내용에 사졸로서 화살이나 철환을 맞아 전사하거나 혹은 부상당한  
사람을 열거하면서 보자기(鮑作人)의 이름 등도 기재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해 포작

께 동고동락(同苦同樂) 해온 제주도 포작인들은 바다가 곧 삶의 일부이며, 삶의 원천이었다. 이에 따라 어로활동을 실천하는 가운데 포작인들은 해양생물의 생태와 습성, 조류 및 해류, 풍향, 해저지형 및 선박건조술 등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세한 해양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밖에 없었다.<sup>58)</sup> 조선정부는 이러한 고도의 해양사적 정보와 기술을 지니고 있는 포작인들을 수군(水軍)으로 편입시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포작인들을 수군으로 활용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1) 이 무리들은 이미 배[舟楫]로써 생활하고 있으니, 바다를 방어하는데 이용하면 곧 국가의 이익입니다. 소재지의 만호(萬戶)에게 부근의 가까운 곳에 분치(分置)하도록 이미 법을 세웠으니, 그대로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적(籍)에 올려 군사를 만들고, 수군(水軍)의 제도와 같게 하되 번들고 교대하는 것을 드물게 하며, 보인(保人)의 수(數)를 넉넉하게 하고, 만약에 둑은 땅과 주인(主人)이 없는 전지(田地)는 점차로 절급(折給)해서, 이들로 하여금 힘써 농사짓게 하고, 혹은 해물(海物)도 채취하게 하여 살아나가게 하면, 만일 변방(邊方)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이 무리들이 가장 수상(水上)에서 쓸 만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sup>59)</sup>

(2) “제주(濟州)의 포작간(鮑作干)들이 남도(南道) 연해변에 와서 살며 없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고 사고하여 살아가는데, 제주 목사 이운(李耘)의 계청(啓請)에 따라 감독하여 쇄환(刷還)하도록 하자 중도에서 도망했었습니다. [곧 김유월(金六月) 등이다] 이번에 또 70여 명을 쇄환하다가 제

인이 광범위하게 수군조직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또한 임진왜란시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에서 46척에 달하는 포작선을 동원하였다는 기록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권2).

58) 아키미치 토모야 지음/이선애 옮김, 『해양 인류학』(민속원, 2005), 372쪽.

59)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조

주의 길이 막혀 현재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종인(李宗仁)에게 물어보니 ‘포작간들은 수전(水戰)을 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니, 바라건대 포작간 70명을 도로 머물러 두어 수전 때의 사용에 대비하되, 이 뒤부터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쇄환하게 함이 어떠하리까?”<sup>60)</sup>

(3) 제주의 세 고을은 주민들이 날로 유망(流亡)하여 고을이 거의 빌 지경에 이르렀기에 경관(京官)을 파견하여 육지로 이주해 온 자들을 일체 쇄환하여 모두 원적(原籍)에 환원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도 수군절도사 유홍(柳泓)이, 수영(水營)에 소속되어 배를 부리는 데 능숙한 포작한들은 일정한 숫자를 머물게 하여야 한다고 청해왔으므로 그대로 머물게 하고 수영에서 부리게 하였습니다.<sup>61)</sup>

(4) 각 포(浦)에 있는 대맹선(大猛船)<sup>62)</sup>은 바탕이 무거워서 역풍(逆風)을 만나면 가지를 못하니 왜적을 만날지라도 잡을 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작선(鮑作船)은 가볍고 빨라서 비록 역풍을 만날지라도 노만 저으면 갈 수 있으며, 대맹선 한 척을 만들 재목이면 작은 배 3, 4척을 만들 수 있습니다.<sup>63)</sup>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사료 (1)과 (2), (3)에서는 왜적에 대한 방비를 논의하면서 남도(南道) 연해변에 살고 있는 출륙 포작인(鮑作人)들을 수전(水戰)에 활용하고자 그들을 쇄환하는 법을 정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배를 다루는데 능숙한 그들을 제주로 환원시키기 보다는 그

60)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 6월 26일 신축조

61)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 1월 10일 계묘조

62) 대맹선(大猛船) : 조선시대에, 수영(水營)에 속한 큰 전투선으로 3층 구조로 이루 어졌으며, 사면에창이 나 있는 배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상 : 대맹선 조, 두산동아, 1999, 1466쪽).

63) 「연산군일기」 권26, 연산군 3년 8월 17일 병술조

곳에 머물게 하여 수군으로 편입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료(4)를 보면 순변사(巡邊使) 이계동(李季仝)이 질둔(質鈍)한 대맹선에 비해 가볍고 빠른 포작선(鮑作船)의 효용성에 주목하면서 포작인들의 배를 병선(兵船)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을 살필 수가 있다.<sup>64)</sup>

이와 같이 포작인(鮑作人)들이 지난 고도의 해양사적인 능력은 중앙 정부로부터 경제적으로 해산물 진상 담당자로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군사 방어책으로도 이용되었다. 이로써 출륙 포작인들은 해당 지역의 수군에 편입되어 그들의 바다와 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에 따라 빈번한 왜구침입에 따른 방어대책에 고심하던 조선 정부의 군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존재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세 번째로, 조선정부가 출륙 포작인에게 취한 정책 속에서 수적(水賊)이나 왜구(倭寇)로 편입되어 나가는 부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신이 전일(前日)에 연해의 여러 고을을 두루 살펴보니, 포작간(鮑作干)이 해변(海邊)에 장막을 치고 일정한 거처(居處)가 없이 선상(船上)에 기생(寄生)하고 있는데, 사람됨이 날래고 사나우며 그 배가 가볍고 빠르기가 비할 데 없어서, 비록 폭풍과 사나운 파도라 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며, 왜적이 이를 만나도 도리어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납니다. 신이 그 배 가운데를 보니 큰 돌이 수십 개 있으므로 신이 쓸 데를 물어 보았는데 대답하기를, ‘왜선(倭船)을 만났을 때 이 돌을 사용하여 던져서

64) 이 당시 제주지역 포작선(鮑作船)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진 ‘덕판배’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배’라 불리는 ‘덕판배’는 제주도 포구의 환경 조건상 그 규모가 작고, 제주섬에 발달한 암석해안을 고려하여 뱃머리에 통나무를 가로로 덧붙여 충돌시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제조되었다. 이러한 덕판배의 기동성(機動性) 및 내파성(耐波性) 등의 우수성으로 인해 조선정부는 덕판배를 병선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 같은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치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신이 또 듣건대, 포작인 이 이따금 상선(商船)을 겁탈하고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며 살해하는데, 간혹 사람이 쫓아가는 바가 있으면 왜인의 신발[倭鞋]을 버리고 가서 마치 왜인이 그런 것처럼 한다 합니다.<sup>65)</sup>

(2) 제주(濟州)의 포작인(鮑作人)으로 전라(全羅) 연변(沿邊)의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산자들이 자못 많은데, 이 무리들은 왕래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전에 해적(海賊)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본도(本道)의 사람들이 모두 이 무리들을 의심하였습니다.<sup>66)</sup>

(3) “지금 형조의 공사(公事)를 보건대, 제주(濟州)의 포작인(鮑作人)들의 일은 지극히 염려스럽다.” [제주 포작인 김유월(金六月) 등 남녀 74명이 전라도 흥덕(興德) 지방에 이사하여 살면서 본토로 쇄환(刷還)되는 것을 싫어하여, 압송(押送)하는 색리(色吏)를 공갈하며 배반하였다] 하매, 사건이 아뢰기를, 추자도 근처에 도서(島嶼)가 많은데 포작인들이 모여 해적 노릇을 하니 찾아서 쇄환하고 수색하여 토벌함이 어떠하리까?”<sup>67)</sup>

위의 사료 (1)은 제주도 출륙 포작인의 또 다른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포작선(鮑作船)의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왜적도 도망갈 정도로의 그들의 강한 전술력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포작인들이 약탈 이후 왜인의 신발을 남겨둠으로써 그들의 행적을 숨기려 하였다는 점에서 출륙 포작인들의 수적(水賊) 행위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이에 다카하시는 이들이 습격한 배로부터 도망갈 때 왜인의 이물(履物)을 두고 간 것은 전술의 묘안이 아니라, 왜복(倭服) · 왜어(倭

65) 「성종실록」 권177, 성종 16년 4월 12일 계해조

66) 「성종실록」 권246,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조

67)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5월 28일 계유조

語)와 함께 왜인과의 교류를 얘기해 주는 사실로서 해석하고 있다. 사료 (2)는 연변 사람들이 해적을 만나면 제주 포작인(鮑作人)의 무리인지를 의심한다는 내용에서 실제 이들이 약탈을 행했다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겠으며, 사료 (3)에서는 출륙 포작인들이 해적(海賊) 행위를 함에 따라 이들을 쇄환조치하기에 이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출륙 포작인(鮑作人)들의 모습은 그들이 조선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면서 수적(水賊)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출륙 포작인의 실태를 세 부류의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 출륙을 감행한 그들은 주로 전라도·경상도 해안에 정착하여 포작(鮑作) 역을 지니며 살아가거나, 또는 그들의 탁월한 해양사적 능력을 인정받아 수군으로 편입된 부류로 구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정부가 그들에게 취한 정책에 의거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기피하여 유랑하면서 수적이나 왜구에 유착되어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켜 나가는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기존의 생활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출륙 포작인들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필요성을 경각시켜 주었다.

### 3. 조선정부의 출륙 포작인에 대한 대책

제주도 포작인(鮑作人)들이 처한 가혹한 사회·경제적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도외로 출륙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제주도 포작인들의 집단적인 유망 도산의 증가는 당시 조선정부에 큰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의 큰 위기감으로 다가왔으며,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조선정부가 출륙 포작인들

에게 어떠한 대책을 취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출륙 포작인의 수적화에 대한 대책

육지로 유망한 출륙 포작인 수의 증대는 당시 왜구(倭寇)와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던 조선정부에게 있어 크게 주목받지 못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쇄환 조치하는데 그치게 되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출륙한 이들을 아무런 생활개선의 보장도 없이 쇄환한다는 것은 출륙 포작인으로 하여금 수적(水賊)과 표리(表裏)를 이루게 하고, 더 나아가 왜구에 편승하여 해적으로 작적(作賊)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sup>68)</sup> 이에 조선정부는 유망하는 포작인들에 대해 ‘방지대책’과 ‘쇄환정책’을 시행하였다.

초기 조선정부는 이들 출륙 포작인들에 대해 강경한 쇄환 정책으로 일관하였지만, 점차 남해안에 정착한 포작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자 강경한 방침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입장 변경은 이들이 왜적과 더불어 수적(水賊)으로 편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고육책이었다.<sup>69)</sup> 따라서 정부는 출륙 포작인들이 정착한 해당 수령들로 하여금 그들을 감시하면서 일정한 지역 내에 안주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기록은 「성종실록」 성종 16년 윤 4월 11일 신묘조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저들이 과연 도적[草竈]질하는 폐단이 있기는 하나, 한결같이 평민으로

68) 한영국, 「豆毛岳'考」, 「한우근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지식산업사, 1981), 812쪽.

69)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미」(민속원, 2006), 114~115쪽.

다스릴 수 없다. 비록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더라도 반드시 즐겨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과 틈이 생길 것이다. 저들이 유이(流移)하는 것은 제주(濟州)의 수령(守令)들이 <저들을> 어루만져 방지하는 것이 방도에 어긋 났기 때문이다. 그것을 수령들에게 일러서 다시 무자(撫字)를 가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라.”<sup>70)</sup>

위의 성종(成宗)의 하교(下敎)는 출륙 포작인들이 수적 또는 해적으로의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회유책으로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선정부의 그들에 대한 유연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륙 포작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남아있는 제주도민은 출륙한 포작인들의 몫까지 떠맡게 되면서 과중된 공부(貢賦)의 부담에 시달려야만 하였다. 이는 포작인들의 출륙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는 남해안의 각 군현에서 관내의 출륙 포작인들을 낱낱이 조사, 등록하고 이들에게 국역을 부과함으로써 그 주거와 생활을 강력히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sup>71)</sup>

(1) 경차관(敬差官) 이의(李誼)가 충청도에 돌아와 서계(書啓)하기를,  
 … 신이 듣건대 바다 연변에 와서 사는 제주(濟州) 사람에게 수령이 역(役)  
 을 정하지 아니한 자를 이제 감사(監司)로 하여금 추국(推鞠)하여 죄를 논  
 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신이 이 사람을 보니 본래 농업은 아니하고 오로지  
 고기를 잡아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 수령이 복작간(蝮作干)이라고 일  
 커고 모든 진상(進上)하는 해물(海物)은 오로지 이 사람을 의뢰하여 채포  
 (採捕)함으로 인하여 사랑해 보호하고 그 사람도 수령이 그를 편안히 살

70) 『성종실록』 권178, 성종 16년 윤4월 11일 신묘조

71) 박찬식, 「출륙금지령과 제주도민」 『월간관광제주』 9-10월호(월간관광제주사, 1989).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만약 침책(侵責)을 당하면 다른 고을로 옮겨서 정처 없이 옮기는 것이 예사입니다. … 이 같은 사람이 몇 천 사람 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루아침에 상부(常賦)의 역을 정하면 역을 피해 도망 쳐 훌어져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수적과 더불어 서로 안팎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청컨대 을사년의 하서(下書)에 의하여 녹안(錄案)하여 수(數)만 알고 역은 정하지 말아서 시끄럽지 않도록 하며, 항상 무휼(撫恤)을 더 하여 그 생활을 편안하게 하소서.<sup>72)</sup>

(2)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과 제주(濟州) 사람들을 정역(定役)한 일은 만약 포작간(鮑作干)을 삼아 해물(海物)을 채취하여 진상(進上)에 이바지 하는 것도 신역(身役)이니, 마땅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을에서 추쇄(推刷)하여 녹안(錄案)하고, 평소 무휼(撫恤)하여 그들이 생업(生業)에 안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이익을 보고 살기를 피하여 다른 고을로 옮겨 가는 자를 만약 금하지 아니하여 거주하거나 옮겨가기를 제멋대로 하여 이로 인해 수적(水賊)이 된다면 그 폐단을 장차 금하기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엄하게 방금(防禁)을 더하여 제멋대로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하고, 만일 도피했다가 발견되는 자는 녹안되어 있는 곳으로 쇄환하되, 수령으로서 잘 무마하고 통어(通御)하지 못하여 이주하도록 한 자는 그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과죄(科罪)하소서.<sup>73)</sup>

이와 같이 사료 (1)에서 경차관 이의(李誼)는 출륙 포작인들에게 역을 정하게 하는 조치는 이미 해당 군현에서 진상 해물을 전담하고 있는 까닭으로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sup>74)</sup> 녹안(錄案)하여 그 수(數)만 알고 역은 정하지 말 것을 전의하고 있다. 이후 한 달여 뒤인 성종 16년(1458년) 4월 21일 기사인 사료 (2)에서 조선정부는 포작

72) 「성종실록」 권226, 성종 20년 3월 15일 계유조

73) 「성종실록」 권227, 성종 20년 4월 21일 기유조

74) 한영국, 「豆毛岳」考, 「한우근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지식산업사, 1981), 813쪽.

인에 대한 그 첫 번째 조치로 이의(李誼)의 건의를 수렴하여 정역(定役)의 부과를 폐지하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추쇄하여 녹안(錄案)하게 하였으며 무휼하여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수적(水賊)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하게 방금하여 이동에 제한을 둘과 동시에 만일 도피했다가 발견되는 자가 있으면 녹안되어 있는 곳으로 쇄환하고, 그 담당 관리에게 그 죄를 묻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포작인들의 출륙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아닌, 그들의 수적(水賊)에 편입하게 됨으로써 수반되어지는 치안상의 혼란과 위기감에서의 임기응변적 조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임시적이나마 그들의 수적화(水賊化)에 대한 통제책으로 작용되었고, 전라도·경상도의 치안을 도모하는 형식에 치중하여 시행되어 나갔다.

결국 포작인들의 출륙하게 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배경인 경제적 개선책을 무시한 채 이루어 졌던 조선정부의 이 같은 대처방안은 출륙 포작인과 수적의 발생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더욱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조에 제주도 진상선이 해적에게 침탈되는 사건<sup>75)</sup>이 일어나자 전라도 연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출륙 포작인들의 녹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출입을 허가제로 하는 방안과 지금까지 등록되지 아니한 신래(新來)의 포작인(鮑作人)에 대해서는 모두 원주지로 쇄환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sup>76)</sup> 이 같은 조선정부의 출륙

75) 「濟州人，齋奉進上方物出來者，爲倭賊所奪，賊變寢息間，請抄軍護涉」『제주 사람으로 진상(進上)할 방물(方物)을 가지고 오던 자가 왜적(倭賊)에게 빼앗겼으니, 적변(賊變)이 그칠 동안은 군사를 뽑아서 호위(護衛)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

76) 한영국, 「묘毛岳考」『한우근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지식산업사, 1981), 814쪽.

포작인에 대한 강력한 쇄환의 조치는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 노비조(奴婢條)에 아래와 같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본도의 백성은 생리(生理)가 매우 고통스러운데다가 남정(男丁)의 역(役)이 몹시 무거운 까닭에 삼읍(三邑) 사람으로 육지에 나아가 돌아오지 않은 자가 매우 많다. 바다를 건너 도망한 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무리를 지어 하나의 촌락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있다. 아들을 낳고 손자를 키울 정도로 세월이 이미 오래이니 쇄환의 법이 비록 엄하다 해도 맡은바 관원이 능히 봉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제 이경구(李慶口)의 장계에 따라 우선 도망한지 10년이 안 되는 자들을 쇄환하고자 했지만, 흉년(凶年)으로 인하여 다시 물고 말았다.<sup>77)</sup>

이처럼 출륙 포작인들은 수시로 그들의 본거지인 제주도로 쇄환되어 왔으나, 이는 새로이 육지로 도망쳐온 신래자(新來者)들에 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아래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樣錄)』의 기록에서는 포작인들의 불법적인 출륙을 막기 위해 제주 도내의 조천(朝天), 별도(別刀) 두 포구만을 한정시켜 개항하도록 했으며, 출항시 출선기(出船記)의 항목을 꼼꼼히 대조하며 점검하는 등의 통제책을 전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묘 이후로부터는 사선(私船)이 임의로 출입하였으므로 도중(島中)의 피역(避役)하는 사람이 이따금 배를 타고 육지로 달아났다. 그 때문에 다만 조천(朝天), 별도(別刀) 두 포구에 대하여서만 배를 놓기를 허가하고, 배를 놓는 날에는 목사와 군관 1인이 문부(文溥)를 잡아 대조하고 점검하여 이를 출선기(出船記)라고 하였으며, 비록 1인 1마라 할지라도 감히 숨기지

77) 이원진(李元鎮), 『탐라지(耽羅志)』 노비조(奴婢條).

못하게 하고, 나쁜 일을 막는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다.<sup>78)</sup>

그러나 포작인의 출륙에 따른 선박출입을 엄격히 조사한 후에 '도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불법적으로 출륙한 포작인들을 잡아 쇄환시키는 등의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조선정부의 이 같은 통제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망하는 포작인의 수를 줄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출륙 포작인에 대한 대책은 그들이 출륙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을 망각한 채 출륙이라는 현상 그 자체만을 줄이기 위한 근시안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포작인들의 출륙은 어찌 보면 중앙정부의 모순에 의해 파생된 순리적인 결과라 생각되어 진다.

## 2) 출륙금지령 공포

조선정부의 유망 제주도민과 출륙 포작인에 대한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16세기 말엽 제주도의 인구수는 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어 갔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그들의 출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인조 7년(1629)<sup>79)</sup> 비변사의 건의한 바대로 제주도에 대해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의 하교를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포작인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떠돌이 해상활동을 하는 까닭을 빙자하여 섬에 정착하지 않음으로 인한 조공 및 부역, 그리고 군복무 할 인력이

78) 김상현(金尙憲), 『남사록(南槎錄)』, 권3, 10월 12일.

79)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8월 13일 을축조, 「濟州居民流移陸邑, 三邑軍額減縮, 備局請嚴禁島民之出入, 上從之」,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되자, 비국이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턱없이 모자라 궁여지책으로 섬을 봉세한 데서 연유하였다고 파악되어 진다.<sup>80)</sup>

(1) 포작(浦作)의 역(役)은 전에 비하여 더욱 괴로워졌다. 본주(本州)의 공안(貢案)에는 추복·조복·인복을 따로 진상하는데, 사재(司宰)가 감독하는 공물은 대중회복(大中灰餕)이 아울러 1만 80여 첨, 오징어 1천 70여 첨인데 모두가 삼읍의 포작(浦作)으로부터 거두기에 힘쓴다. 기타 해채(海菜)는 수령(守令)이 헐값으로 억지로 사들여서 다시 이들에게 육지에다 내다 팔아오게 하여 곱값으로 독려하여 받아서 자기를 살찌게 하는 밑천으로 삼는다. 세월이 지나가자 잠녀(潛女)와 포작배(浦作輩)가 곳곳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참혹하고 상심함이 이와 같았음에야. 그러나 그들 무리는 바다에서 따지 않으면 또한 살아갈 수 없으니 그 사정의 딱함이 그치지 않는다.<sup>81)</sup>

(2) 「해읍(海邑)에서 전복을 공납하는 것은 모두 관청에서 값을 주어서 보장하는데, 유독 제주에서는 공납하는 전복에다가 거북껍질과 오징어의 공납이 있는데도 값을 보장해 줌이 없어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르지 못하오니 그 값을 보상해 주어 고을의 손실을 덜어 주시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다.<sup>82)</sup>

사료 (1)과 (2)의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조선정부가 유망자에 대한 쇄환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행정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포작인들의 고통은 되풀이되었다. 이런 점에서 출륙금지령은 단순히 제주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

80) 한립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61쪽.

81) 이증(李增), 「남사일록(南槎日錄)」, 숙종 5년 12월 초8일.

82) 이증(李增), 「남사일록(南槎日錄)」, 의주부윤(義州府尹) 이공(李公) 갈명(碣銘).

한 대책이라기보다 인구감소로 발생했던 국가 재정의 감축에 의한 우려로서 시행되어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출륙금지령의 반포는 오히려 더 많은 포작인들을 육지로 내몰리게 했으며, 그 결과 전복 진상 역을 전담하는 포작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조선후기에 들어와 포작들의 역 동원으로만 정해진 전복 및 해산물의 진상 액수를 채우는데 한계로써 작용하게 되었다.<sup>83)</sup>

### 3) 남아있는 포작인에 대한 대책

출륙 포작인 외에 제주도에 남아 있는 포작인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책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조선정부의 포작인에 대한 진상·공물의 수량 경감을 들 수 있겠다. 위의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산물의 진상 액수는 18세기를 전후로 해서 전 시기보다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전복 채취를 담당하던 포작인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데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김성구의 『남천록(南遷錄)』 8월 15일자의 기록과 이형상의 『제주민막장(濟州民撫狀)』에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1) 오늘은 명절이어서 일을 보지 않았다. 본 현에는 포작인(浦作人)이 겨우 10여명인데 매달 진상하는 수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봉진(封進)할 때마다 독촉을 심히 급하게 하고, 관가에서 징색(徵索)하는 것도 또한 많으므로 마음으로 매우 죽은하게 여기었다. 이곳에 온 후로 무릇 포작인에 관계되는 부역을 없애고 수량도 감하여 내려 주었더니, 저들이 명절이라고 칭하

83)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민속원, 2006), 118쪽.

며 약간의 포복(鮑鰐)을 가지고 왔다. 또한 그 순박한 풍속을 볼 수 있다.<sup>84)</sup>

(2)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80명이 1년간 공납하는 바는 거의 1만 여첩이 이릅니다. 만약 별양(別樣)으로 변통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류의 지대(支待)를 몇 년 얻는 것도 그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 그만 두지 말라고 하신다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의 회록으로 상평청 모전비(耗田米) 3백 석을 특별히 획급하여 주신다면, 3읍에서 공납하는 추복·인복·조복·오징어들을 값을 주고 사서 공납할 수 있습니다. 회전복·분곽·조곽·곽이 만을 분정 하여 받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진휼하는 뜻을 보여주신다면 겨우 버티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를 쫓아 응당 내리는 물건이 아니므로 능히 관용으로 금지할 수 없어서 이어 도리어 나라 곡식으로부터 얻기 를 청하는 것입니다.<sup>85)</sup>

위의 사료 (1)은 조선 숙종 5년(1679)에서 숙종 8년(1682)의 3년간 정의현감으로 재임한 김성구가 포작인들의 고충을 측은히 여겨 그들의 전복 진상액을 감하여 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사료 (2)에서는 숙종 29년(1702) 제주목사로 재임 중에 있던 이형상이 3백여 명에 달하는 포작인의 수가 80여 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전복과 오징어를 관에서 값을 주고 사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요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결국 해산물의 수량을 반 이상으로 절감하게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진다.<sup>86)</sup>

두 번째 포작인들이 진상의 고역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평역고(平役庫) 및 보민고(補民庫) 설치 등의 지방 재정의 운영을 들 수 있

84) 김성구(金聲久), 「남천록(南遷錄)」, 8월 15일.

85) 이형상, 「濟州民瘼狀」 / 「숙종실록」 권37, 28년 7월 12일 신유조

86) 박찬식, 「『耽羅巡歷圖』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 『耽羅巡歷圖研究論叢』(탐라 순력도연구회, 2000), 108쪽.

겠다.

- (1) 영조 14년(1738), 평역청(:평역고)를 설치하고 제번한 각색군관, 각 양생들로부터 받아들인 평역미를 이들에게도 지급토록 한 조치함.<sup>87)</sup>
- (2) 정조 15년, 대정현의 포작인이 내는 지장복(地裝復), 마두복(馬頭復), 경주인역가복(京主人役價復)의 가격을 미가(米價)로 환산하여 평역미로 구입함.<sup>88)</sup>

사료 (1)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행해진 이러한 조치는 포작인들의 공물 진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으나, 평역고 운영이 부실해짐<sup>89)</sup>에 따라 이들을 배려한 조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초기 평역고의 설립 목적은 군역변통, 고역처(苦役處)의 부담 경감과 더불어 관아재정 확충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매년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군역과 고역처에 관계가 된 것은 담한, 목자, 선격뿐이었고 그 외에는 관속(官屬)과 관노비들에 대한 급료가 대부분으로 당초 설립 목적이 어느 한 방향으로 편향되어 운영되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 정조 5년(1781)에 제주어사로 파견된 박천형(朴天衡)은 서계(書啓)를 통해 포호(浦戶)가 매달 관가(官家)에 진배(進排)하는 어복물(魚復物) 중 부정한 명목과 이치에 맞지 않게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87) 『제주읍지』 濟州牧 均稅條 / 大靜縣 備廩條(아세아문화사 읍지 6, 1983), 210~211쪽.

88) 『신해대정현리정절목(辛亥大靜縣釐正節目)』.

89) 『비변사등록』, 정조 2년 무술 5월 23일 / 『비변사등록』, 정조 6년 임인 1월 15일 / 『비변사등록』, 순조 11년 신미 3월 27일(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 『備邊司膳錄中 濟州記錄』, 1999).

모두 혁파하도록 하였으며, 평역고의 폐단과 포작(鮑作)을 포함한 6고역의 폐해를 논하면서 6고역에게 예하미(例下米)를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다.<sup>90)</sup>

헌종 9년(1843) 포작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되는데,<sup>91)</sup>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원조(李源祚)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濟州牧 工匠條 鮑作에 대한 다음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포작(鮑作) : 진상 추인복 및 관용 물고기·전복 모두를 포작에게 명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명한 즉, 진상 선수 예리<sup>92)</sup>는 관용으로 쓸 비품을 개인에게 사서 공급가격으로 처리하라.<sup>93)</sup>

위의 기록에 따르면, 포작이 부담했던 어복(魚鱉) 진상역을 예리처(禮吏處)가 대행하게 하고 관아용은 민간에게서 사들이게 함으로써 표면적으로 포작역은 없어진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포작은 또 다른 선격(船格)으로서의 역을 지게 됨에 따라 소위 '6고역'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였다.

선격(船格) 혹은 격군(格軍)이라 불려지는 또 다른 성격의 포작의 역(役)은 목숨을 담보로 진상공물을 싣고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는 포작

90) 고창석, 「자료소개」 濟州巡撫御使 朴天衡의 書啓, 「제주도사연구」 제8집(제주도사연구회, 1999), 79쪽.

91)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2쪽.

92) 「제주대정현하모슬리호직중초」 도광 11년(1831) 3통 3호에 직역이 선수예리인 오창제(吳昌齊: 32세)의 기록이 보이며, 6년 후인 도광 17년(1837)에 그의 직역은 서원(書員)으로 변동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93) 이원조, 「탐라지초본」, 제주목 공장조 포작, 「進上搘引鱉及官用魚鱉皆令鮑作擔當令則進上善手禮吏處給價備納官用私貿」

역 만큼이나 고된 역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격군 역을 기피하여 그 숫자는 실로 전무할 정도였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때마다 임시로 모집해 부리고 고가를 첨급(添給)하는 양상으로인 ‘임시모격 첨급고가(臨時募格添給雇價)’로 변질되었다.<sup>94)</sup>

또한 격군을 모집할 때 진속(鎮屬)·이속들의 농간이 전개되어 나타났으며, 격군에 든 부형이 병이 들어 격역(格役)을 이행치 못할 때에는 그 역이 자체에게 칙정(勅定)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폐해도 발생되었다. 다시 말해 격군 고가로 5, 6필목을 내야지만 격군역이 면제될 수 있었고 관아에서는 이를 가지고 식년대공마 운송비용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들 대납자 대거가 빈궁자였으므로 자식을 팔아 갚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족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 이 문제는 현종 12년(1846)에 이르러 진휼고 모조(耗條) 일부를 보민고에 옮기고 이를 통하여 식년대공마 격군 고가(雇價)를 지급함으로써 해결되게 되었다.<sup>95)</sup> 이후 철종 5년(1854)에 보민고의 기능을 확대시켜 담은고(覃恩庫)와 견역고(蠲役庫)의 쌀을 보민고로 이부(移付)시켜 대정·정의현의 진상어복가(進上魚鱉價)와 백립(白蠟)·표고버섯의 진상가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sup>96)</sup>

이렇듯 조선정부는 출륙 포작인을 경감시키려는 목적 하에 제주에 남아 있는 포작인들에게 평역고와 보민고 등의 관아재정을 설치하여 평역미를 지급하고, 예리처로 하여금 포작의 진상역을 대리케 하는 등의 조

94) 권인혁,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哲宗朝 濟州民亂과 관련하여」, 『이원순 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교학사, 1986), 298쪽.

95)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제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89쪽.

96) 『탐라사례(耽羅事例)』, 보민고 조(補民庫 條).

치를 취하였다.

한편, 포작인들의 또 다른 역인 선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선격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모집하여 고가(雇價)를 지급하는 형식으로의 유동적인 조취를 취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

#### 4. 포작인의 소멸 시기와 원인

조선후기로 들어오면서 포작인(鮑作人)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갔으며, 결국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sup>97)</sup>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제주도 포작인들이 무슨 이유에서 사라져 갔으며, 이들이 담당하였던 전복을 비롯한 각종 해산물의 진상은 누구에게로 전가되었는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포작인들이 사라져간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으로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폐단에 따른 유망, 즉 출륙을 들 수 있겠다. 잡역(雜役)·잡부(雜賦)에 따른 포작인들에게 주어진 고질적 병폐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함에 따라 육지로의 출륙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포작인의 수는 대폭 감소되어 나간다. 이러한 상황은 정의현감 김성구(金聲久)가 제주목사 최관(崔寬)에게 읍폐(邑幣)의 상황을 논하여 보고한다는 장계에서 살필 수가 있다.

본 협의 진상하는 수량은 극히 그 범위가 넓고 많습니다. 포작한(鮑作漢)은 단지 7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진상

97) 현종 14년(1848) 3월 이후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동경대학소장본 「탐라지」의 공장조에서는 포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광무 6년(1902) 9월 이후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남만리의 「탐라지」 공장조에서는 포작인의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그들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역(進上役)에 응함은, 그 형편이 진실로 공급하지 못할 바이옵니다. 아울러 본현은 타읍과 달라서 날씨가 편온한 날이 절무(絕無)합니다. 애오라지 바람이 아니면 비가 오고, 비가 아니면 안개 날씨로, 채복(採復)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매 월령(月令)을 당하여 진상할 때면 혹은 잡아 가두어 대신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보내어 형틀의 채찍을 극도로 사용하지 않은 바가 아니었으나 또한 그래도 수량을 채우지 못합니다. … 또 고로(故老)의 말을 들으면 전에는 포작인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족히 진상역(進上役)에 응할 수 있었던 까닭에 진상할 때 조금도 궐함이 없었는데, 경신년(1680년, 숙종 6) 이후로 거의 다 죽고 남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 위에서 분담시키는 수가 비록 할인하여 준다 하더라도 실은 앞선 보다 더한 셈이니 조판(措辦)할 형편이 만무하고, 혹은 누차의 퇴한지환(退限之患: 진상 기한을 뒤로 물리게 되는 걱정)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sup>98)</sup>

두 번째 원인으로 위에서 언급하였던 현종 9년(1843)에 포작인들이 수행하던 진상역을 예리처에서 대행하게 하고, 관아용은 사무역(私貿易)으로 충당함에 따른 포작역의 혁파를 제시해 볼 수 있겠다. 그 결과 포작역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들은 또 다른 성격을 지닌 격군으로의 역에 징발됨에 따라 포작이 아닌 격군으로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료가 참고 된다.

(1) 수군(水軍) : 지금 숫자는 제주성 소속 152명과 보인이 각 2명, 총패(摠牌) 6명이 있다. 조천 소속 32명, 별방 소속 9명, 애월 소속 13명, 명월 소속 14명이 있다. 수군이 부족하니 전선의 격군은 포작으로써 충당하고 겹하여 치고 찌르는 훈련을 익히는 것이 마땅하다.<sup>99)</sup>

98) 김성구(金聲久), 『남천록(南遷錄)』, 제주목사 최관(崔寬)에게 읍폐(邑幣)의 상황을 논하여 보고함(숙종 5년, 8월 6일).

99) 이원진(李元鎮), 『탐라지(耽羅志)』, 제주목(濟州牧) 군병조(軍兵條) 수군(水軍).

(2) 전선(戰船)은 포작한(鮑作干)이 없으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가(代價)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장(戰場)에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처자를 무휼(撫恤)할 만한 가물(價物)을 넉넉히 지급할 일을 행이 (行移)하여 알렸습니다. 각처의 포작한들이 격군(格軍)으로 동원된다는 영(令)을 듣고는 온갖 계책을 다하여 이를 피하려 도모하고 있습니다.<sup>100)</sup>

위의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 군병조(軍兵條) 수군(水軍)에 대한 기록과 『선조실록』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작인들은 격군역으로 징발되어 충당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선조실록』에서 '포작인 없이는 전선(戰船)을 운행할 수 없다'는 기록에서 조선정부가 배를 다루는 그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포작인이 격군으로 징발됨에 있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벗어나려는 모습에서 포작역과 마찬가지로 격군(格軍)역의 고충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포작인들이 소멸해 간 그 세 번째 요인으로 조선후기로의 성리학적 질서에 입각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들 수 있겠다. 비록 제주도가 절해고도의 섬이긴 하나 가부장적인 이념적 사고방식과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유교적 윤리관이 전해들어오지 않을 리가 만무하였으며, 이에 농사나 장사보다 포작(鮑作) 역(役)인 물질은 더욱 천한 직역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남성인 포작인들은 점차 그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추정되어지며,<sup>101)</sup> 이러한 조선후기 포작인들의 급격한 감소로 말미암아

100) 『선조실록』 권121, 선조 33년 1월 4일 기유조

101) 한림화는 제주도 포작인들이 사라진 이유를 고려시대부터 조선조 내내 주로 정치 범의 수형지로 제주섬이 이용되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범은 대개가 왕족과 양반계층의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유형지에서도 일하지 않고 권위롭게 살았다. 이러한 모습을 접하면서 제주의 남성들은 '글 읽는 일'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에 상일에서 손을 놔버렸을 것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림화, 「역

그들이 담당하였던 포작(鮑作)의 역은 여성인 잠녀(潛女)에 의해 행해지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이들 포작인들의 재생산이 불가능 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제주도는 남자의 역이 몹시 무거운 까닭에 삼읍(三邑) 사람으로 육지에 나아가 돌아오지 않는 자가 매우 많으며,<sup>102)</sup>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침몰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1년이면 백여 명을 밑돌지 않은 까닭에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었다고 한다.<sup>103)</sup> 이러한 ‘남소여다(男小女多)’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작인들은 처첩을 거느리지 못하고 홀아비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김상현의 「남사록」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

제주 풍속은 많이 처첩(妻妾)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작배(浦作輩)는 홀아비로 살다가 늙어 죽는 자가 많이 있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본주(本州)에서 전상하는 전복의 수량이 매우 많고 관리들의 공(公)을 빙자하여 사욕을 채우는 것이 또 그 몇 곱이 되므로 포작배는 그 일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익사하여서 열에 둘 셋만 남게 되나 징렴 공응(供應)은 전보다 줄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그 몸은 오래 바다에 있고 그 아내는 오래 육 속에 있어 원한을 품고 고통을 견디는 모양은 말로 다 이를 수 없다. 이런 때문에 이웃에 사는 홀어미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빌어먹다가 스스로 죽을지언정 포작인(浦作人)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sup>104)</sup>

이렇듯 포작인들에게 주어진 사회·경제적 상황은 여성들조차도 기

사로 보는 제주해녀»,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56~57쪽).

102) 이원진(李元鎮), 『탐라지(耽羅志)』, 노비조(奴婢條).

103) 임체(林悌), 『남명소승(南溟小乘)』, 선조 11년 2월 16일.

104) 김상현(金尙憲), 『남사록(南槎錄)』, 9월 22일 병자조

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제주도의 남소여다(男少女多) 사회로서 형성되어진 보편적인 처첩(妻妾)제도의 범주 안<sup>105)</sup>에 그들 포작인은 제외 대상이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현재 구전(口傳)되어 오는 제주도 속담에 “보재기 삼, 사대민 초상을 물에 뉙진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어부(포작인)로 삼, 사대를 내려오다 보면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도 생겨난다는 뜻을 지닌 속담으로서,<sup>106)</sup> 생계를 위해 바다에 몸을 실었던 이들 포작인의 고충과 희생을 묘사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재생산의 불가능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 빚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작인의 명칭과 그들 존재가 문헌상에 사라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포작인들은 조선왕조 초기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에 맞물려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진상과 갖가지 부역, 그리고 이들이 출륙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들로 인하여 더 이상 포작인으로서의 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음을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에 포작인들이 점차 소멸되어 감에 따라 기존 그들에게 주어졌던 역의 부담은 결국 그들과 유사한 환경적·사회적 처지에 놓여 있던 잠녀(潛女)들의 몫으로 전가되어졌다. 따라서 남녀성별 구분에 의한 포작

105) 김상현(金尙憲), 「남사록(南槎錄)」, 9월 22일 병자조, 「地誌生女爲重 貢獻商船前後 海路險隔屢致漂沒 故州人以生女爲重 女數三倍於男 雖行乞者并畜妻妾 南溟小乘亦云 雖殘疾男子 娶婦多至八九人矣」, 지지(地誌)에 의하면 딸 놓기를 중히 여긴다. 진상 상선이 전후(前後)하여 이어지고 바닷길은 혐하여 자주 표물을 당하기 때문에 섬사람은 딸 놓기를 중히 여기며 여자 수가 남자의 세곱이나 되어 거지라 할 지라도 다 처첩을 가지게 된다. 남명소승에서도 역시 말하기를 비록 병이 있는 남자 일지라도 부인을 취하는데 많게는 팔구(八九)인에 이른다고 하였다.

106) 문금숙, 「제주속담에 나타난 제주인들의 생활상」, 「돌과 바람의 역사」(제주역사연구회, 1993), 121쪽.

인(鮑作人)과 잠녀(潛女)의 명칭은 조선후기로 들어오면서 그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포작(鮑作)'이 잠녀(潛女)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졌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내용은 조선후기로부터 오대까지 구전되어 온 한경면 옹포리 송씨(宋氏)해녀의 '鮑作嘆'이라는 한시(漢詩)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 포작탄(鮑作嘆)

어려서부터 자맥질과 땀배 띄움을 악혀  
열여섯 되던 해에 격군에게 시집왔네.  
바다는 매양 우리 집 뜰과 같으나  
같은 밭에서 일을 하며 따로따로 살아야 하네.

소학잠영협부사(少學潛泳驗浮槎)

이팔귀우격군가(一八歸于格軍家)

해국도시오정재(海國都是吾庭際)

동전위업각생애(同田爲業各生津)

위의 한시는 잠녀(潛女)의 고달픈 생애가 사행 이십자(字)에 요약되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잠녀가 생활의 터전인 바다를 아예 뜰로 생각함으로서 바다에 종사하는 고통을 즐거움으로 읊겨놓고 있다.<sup>107)</sup> 이렇듯 이 글의 저자가 잠녀(潛女; 해녀)임에도 불구하고, 잠녀들의 고된 삶의 내용을 담은 한시의 제목을 포작탄(鮑作嘆)이라 적어놓고 있음에 따라 이 시를 지을 당시인 조선후기에는 포작과 잠녀의 의미가 혼용되어 쓰여 지고 있었음을 살필 수가 있다.

107) 오문복 편저, 『영주풍아(瀛州風雅)』(도서출판 제주문화, 1988), 113쪽.

#### IV. 맷음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전복을 채취하는 남자’로 일컬어지며 제주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개척해 나간 ‘포작인(鮑作人)’의 존재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제주도 사회상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地瘠民貧 惟以水道 經記謀生”라 하여 바다에서의 해양활동은 제주도 사람들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채취한 해산물을 육지 물품과의 교환·매매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여 왔다.

이렇듯 제주도민의 삶에 있어서 바다는 한시도 떼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계를 위해 바다로 향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제주도 사람들의 생 한 가운데, 거친 파도와 함께 그 이름이 사라져간 포작인이 있었다.

위에서 살펴 본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포작인의 명칭 및 존재와 의미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포작인에 대한 성격을 추이해 보았다. 포작인(鮑作人)·포작간(鮑作干)·포작한(鮑作漢)·복작간(蝮作干)·포작배(鮑作輩) 등 『조선왕조실록』과 고문헌에 다양하게 명명되어지고 있는 포작인은 바다에서 고기와 해산물 채취를 업으로 삼고, 이를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교환·판매하여 생활해 나가는 남자어부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여러 고을의 해산의 진품(珍品)을 진상하는 역으로 동원되었던 사람으로 개념·정의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 바다를 공통으로 생활무대로 삼으면서 국가에 해조류의 진상하는 역을 담당하였던 포작(鮑作)과 잠녀(潛女)와의 성별적 분업이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이어 포작인과 출륙 제주도민, 즉 두

모악과의 관계에 대해 상고해 보았을 때, 이 둘은 동일선상에서 이야기 할 수 없으며 포작인은 그들과 서로 구분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Ⅲ장에서는 포작인들의 출륙과 존재양태에 대해 접근해 보았다. 먼저 이들 포작인들이 무슨 이유에서 고향인 제주를 등지고, 육지로의 출륙을 감행하여야 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주도의 열악한 지형적 조건으로 말미암은 생계적 고난과 더불어 조선정부의 과중한 공부(貢賦) 증대와 탐관오리 및 향권(鄉權)의 부당한 착취·수탈은 결국 포작인들을 육지로 내몰게 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파생되어진 잦은 왜구의 침입과 그로 인한 극심한 피해는 제주 방어체제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방·방어시설의 구축 및 군사로써 징발되는 등의 군역의 증대도 그들의 출륙을 도운 배경으로써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출륙한 그들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출륙 포작인들은 주로 전라도나 경상도 해안 지역에 산거하면서 포작의 역을 지고 정주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이 몸소 체험에 의해 습득되어진 해양사적 정보로 말미암은 선박 건조술과 항해술, 수전술은 조선왕조에 의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왜구 침입시 격군(格軍) 등의 수군(水軍)으로 편입되어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들에게 취한 정책에 의거하지 못했거나 이를 기피하였던 또 다른 출륙 포작인들은 한반도 연해안을 유랑하면서 수적(水賊)이나 왜구(倭寇)에 유착되어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 출륙 포작인들의 집단적인 유망도산의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대책에 관해 주목 하였다. 조선정부는 유망하여 수적이나 왜구에 편승하는 포작인들의 증가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지대책 및 쇄환경책 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치는 포작인들이 출륙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을 인식하지 못한 임시방편적인 조처에 불과하였음에 따라 유망하는 포작인의 숫자를 줄이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인조 7년(1629) 그들의 출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출륙금지령'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남아 있는 포작인들에 대해서는 해산물 진상공물의 수량 경감과 함께 평역고 및 보민고를 설치하여 그들의 어복 진상의 고역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예리처로 하여금 포작의 진상역을 대리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포작인들은 또 다른 역인 선격(船格)으로서의 역을 지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는 해소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후기로 들어오면서 포작인들의 수는 점차 감소되어 갔으며, 결국 그들의 모습과 명칭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4번째로 그들이 소멸되어 가는 시기와 그 원인에 대해 추측·논의해 보았다. 포작인들은 조선왕조 초기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화에 정책에 맞물려 과중하게 부과되었던 공물·진상과 갖가지 부역, 그리고 이들이 출륙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들로 인하여 더 이상 포작인으로서의 역을 감당할 수 없어 육지로의 출륙을 감행하게 되었으며, 포작인들이 점차 소멸되어 감에 따라 기존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역의 부담은 결국 그들과의 같은 환경적·사회적 처지에 놓여 있던 잠녀(潛女)들의 몫으로 전가되어졌다.

또한 포작(鮑作)이라는 역이 지녔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처첩을 거느리지 못하였으며, 이에 포작인의 재생산이 불가능하여 그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 갔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후기에의 성리학에 따른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

의 사라져간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가정적인 추측에 불과하며 포작인의 명칭과 그들 존재가 문헌상에 사라져간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 포작인이 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오랜 옛날 그들의 해양활동은 실로 다방면에서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지배체제 모순 속에서 외지로의 삶의 공간을 확장시켜 나감에 따라 유동적으로 한계점을 타개해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주도 포작인들의 해상활동의 모습은 해양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문헌자료

『經國大典』, 『高麗史』, 『南溟小乘』, 『南槎錄』, 『南槎日錄』, 『南遷錄』, 『南宦博物』, 『備邊司瞻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辛亥大靜縣釐正節目』,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風土記』, 『濟州風土錄』, 『濟州邑誌』, 『朝鮮王朝實錄』, 『知瀛錄』, 『耽羅錄』, 『耽羅事例』, 『耽羅巡歷圖』, 『耽羅志』(이원진), 『耽羅誌』(남만리), 『耽羅誌草本』, 『耽羅防營摠覽』, 『耽營關報錄』, 『耽營事例』, 1609년 「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

### 2. 연구논저

#### 1) 단행본

- 고창석 외, 『19세기濟州社會研究』, 일지사, 1997.  
국사편찬위원회, 『各司瞻錄』 54, 전라도보유편2, 1991.  
김봉옥 편역, 『續耽羅錄』, 제주문화방송, 1994.  
김봉현, 『濟州島歷史誌』, 경인문화사, 2005.  
김익수 역,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_\_\_\_\_,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김인호, 『韓國濟州歷史·文化擧理學』, 우용출판사, 1997.  
박용후 역, 『남명소승』, 제주문화, 1989.  
서귀포문화원, 『법환 즘녀마을 역사·문화 고증 및 기본계획』, 2004.  
송성대, 『濟州人의 海民精神』,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_\_\_\_\_,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1998.  
송수환, 『朝鮮前期王室財政研究』, 집문당, 2000.  
아키미치 토모야 지음/이선애 옮김, 『해양 인류학』, 민속원, 2005.  
오문복 편저, 『영주풍아(瀛州風雅)』,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8.  
이원조, 『耽羅誌草本』(영인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이원진 씀·김찬흡외 옮김, 『(역주)탐라지』, 푸른역사, 2002.  
이형상 『耽羅巡歷圖·南宦博物』(영인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제주도교육연구원,『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_\_\_\_\_ ,『鄉土史教育資料』, 제주도교육연구원, 1996.
-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備邊司贍錄中濟州記錄』, 1999.
-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耽羅巡歷圖』, 제주시, 1994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해녀항일운동의 역사와 기념』, 2007.
- 좌혜경 외,『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國譯瓶窯集(III)』, 1990.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지리지총서『邑誌6』 제주도, 서울아세아문화사, 1983.
- 한복진,『조선시대 궁중의 식생활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2) 논문 및 기타

- 강영봉,「固有語彙研究 <耽羅營事例>와 <濟州事例>를 중심으로」『탐라문화』 제2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9.
- 고창석,「『자료소개』濟州巡撫御使朴天衡의書啓」『제주도사연구』 제8집, 제주도사연구회, 1999.
- 권인혁,「19世紀前半濟州地方의社會經濟構造와 그變動哲宗朝濟州民亂과 관련하여」『이원순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교학사, 1986.
- \_\_\_\_\_,「19세기초榮濟海의謀變實狀과 그性格」『탐라문화』 제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 \_\_\_\_\_,「朝鮮後期地方官衙財政의運營實態-濟州의《事例》를 중심으로」『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권인혁·김동전,「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탐라문화』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김동전,「濟州島貢物進獻에 대한考察-朝鮮王朝를 中心으로」『제주사학』 창간호,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1985.
- \_\_\_\_\_,「18·19世紀濟州島의身分構造研究:『大靜縣戶籍中草』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나가모리 미쓰노부(長森美信),「조선후기 제주進上物 조달과 수송」『탐라문화』 제2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 다카하시 기미아끼(高橋公明),「中世東亞世亞海域에서의 海民과 交流」『탐라문화』 제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문금숙, 「제주속담에 나타난 제주인들의 생활상」『돌과 바람의 역사』, 제주역사연구회, 1993.
- 박찬식, 「19세기 濟州 지역 進上의 실태」『탐라문화』 제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_\_\_\_\_, 「『耽羅巡歷圖』에 보이는 제주 진상의 실태」『耽羅巡歷圖研究論叢』, 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 \_\_\_\_\_,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収取制度와 特徵」『탐라문화』 제2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 유승원, 「양인」『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전형택, 「조선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6.천인」『한국사』 25권, 국사편찬위원회, 2003.
- \_\_\_\_\_, 「조선후기의 사회-5.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한국사』 34권,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진영일,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形成考」『濟州島史研究』 제3집, 제주도사연구회, 1994.
- 한림화, 「해양문명사 속의 제주해녀」『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한영국, 「豆毛岳考」『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Abstract**

## Existence of Jeju 'Pojaks'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Kim, Na-young\*

This paper focused on the existence of 'abalone collecting men' or 'pojak' who have used the ocean for their living through all which the social situations then on Jejudo island could be sought.

Jejudo people have had various histories with the sea because of the uniqu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s the island, with which Jeju residents have collected seafood at the earlier time and sometimes would faced heavy seas and drifted while trading with surrounding countries with their merchant vessels. Among such their lives are abalone collectors whose names had been disappeared with troubled sea waters. The summary of what discuss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In the second chapter,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nature of the collectors by considering their name, existence, and meaning. First, the author searched the names of 'pojakin' or the abalone collectors in the old literatures including 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and reviewed them comparing with the previous studies on their names which had been called variously such as 'pojakin', 'pojakgan', 'pojakhan', 'bokjakgan', or 'pojakbae.' Jeju 'pojakin' could be defined as male fishers who gathered fish and seafood in the sea and exchanged and sold them in the villages around the coastal areas in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 They also were the men who had chosen to present to the

---

\*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king marine products.

In the third chapter, the researcher focused their leaving of the island and their existence. First, the author considered the reason of their leaving for the mainland left behind Jeju which was their hometown. Here are the social and economical reasons that they were forced to go to the mainland: troubles in their livelihood caused by the poor geographical nature, the increasing amount of tribute for the Joseon Dynasty, and the excessive demand from corrupt officials and local nobilities.

Second, the author studied the developments after their leaving for the mainland. The abalone collecting men were staying on the coastal areas mainly in Jeolla and Gyeonasang Province gathering seafood. And they obtained oceanic information in person including ship building know-how, navigation, and art of ocean war, which were urgently needed for Joseon government who had been suffering from the invasion from Japanese pirat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located them in the naval forces aiming to use their military abilities. On the other hand, other collectors who didn't follow or did avoid the government's structure, would wand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in collusion with the pirates including Japanese pirates.

Third, the researcher focused on several measures taken by the Joseon government in order to prevent the increase in their collective escapes. The Joseon Dynasty attempted to take a few countermeasures to prevent it and bring them back from the pirates. These countermeasures, however, failed to decrease the number resulting in issuing the ban on leaving the mainland. For the remaining collectors, the government reduced the amount of seafood tribute and also set up a tax payment association named 'peongyeokgo' and 'bomingo' for the sake of their obligated labor to present seafood tribute to the king.

However, they also had to have the duty of official soldiers among six obligated labors, which produced different kinds of problems.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the number of the abalone gathering men had decreased and finally the existence and name had disappeared. Fourth, the author supposed and discussed the cause of their disappearing.

As previously mentioned, the author strived to shed new light on them recognized as 'the target of exploitation and control' by revealing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the 'pojakin' in Jeju and considering their social status and the changes of Jikyeok. In the early days, they had robust marine activities with multiple aspects and attempted to go beyond the restrictions with their own flexibilities, expanding their special livelihood even under the contradiction of governance system in Joseon Dynasty. We should pay attention that their marine activities have the enormous significance in the marine history.

**Key Words**

Pojakin, abalone, seafood, Jinsang, The ban leaving the mainland, Six obliged labors

교신 : 김나영 690-7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10-3  
현대아파트 104동 801호  
(E-mail : knbh68@naver.com 전화 : 010-9898-6877)

최초 투고일 2008. 1. 10  
최종 접수일 2008. 1. 25